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지침

2024. 1.

노동정책담당관

Contents | 목 차

I. 사업목적 및 개요

- 1. 사업목적 및 근거 7
- 2. 사업개요 8
- 3. 용어정리 13

II. 신청 및 지급

- 1. 신청 19
- 2.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30
- 3. 신청등록 40

III. 조사 및 선정

- 1. 조사 42
- 2. 심사 47
- 3. 선정기준 49

IV. 지급

- 1. 지급결정 및 지급 53
- 2. 이의신청 55

V. 사후관리

- 1. 사후관리 개요 57
- 2. 환수 57
- 3. 환수관리 59

VI. 자문위원회 운영

- 1. 근거 62
- 2. 설치 및 운영 62
- 3. 주요기능 62

VII. 서식

- 1. 서식 64

VIII. 참고자료

- 1. 2024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85
- 2. 담당자 확인 사항 분류 기준 86
- 3. 보건소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88
- 4.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90
- 5.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지침 변경 이력 93

2024년 서울형 임원 생활비 지원 주요 개정사항

주요 기준의 개정사항은 지침 본문에 파란색으로 표시하고, Q&A는 본문 내용과 연결하여 '자주찾는 질문'으로 업무담당자가 확인하기 쉬도록 구성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침 본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지침 개정사항은 2024. 1. 1. 접수분부터 적용

구분	2023년	2024년						
주요내용 (3쪽) 외	1일 89,250원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91,480원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주요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22.12.31.까지 한시적 시행, 신청기간이 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23.6.28.까지 ※ 상세내용 2023년 지침 104쪽 참고	삭제						
Ⅲ. 조사 및 선정 (43,49쪽)	2023년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구분	1인	2인	3인	구분	1인	2인	3인
	금액(원/월)	2,077,892	3,456,155	4,434,816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4인	5인	6인	7인	4인	5인	6인	7인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 ,987,049원)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Ⅲ. 조사 및 선정 (44쪽)	④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아래 서류로 대체 가능(고시원, 지인 집 등에서 거주 또 는 사업장 운영 시 등)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사용대차 확인서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실거주 확인서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전대차 관계 확인서			④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 사업장 사용 확인서[서식 제11호]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구분	2023년	2024년												
VII. 서식 (80쪽)	[서식 제11호] 사용대차 확인서 [서식 제12호] 실거주 확인서 [서식 제13호] 전대차 관계 확인서	[서식 제11호]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변경 [서식 제12호] 폐지 [서식 제13호] 폐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신청자 정보 중 세부직업명 신청자 직접 입력	신청자 정보 중 세부직업명 입력코드 선택 입력												
	①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미구분 ② 임대차계약서 등 업로드 없이 최종제출 ③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3종(사용대차 확인서, 실거주 확인서, 전대차관계 확인서) 중 선택 제출	① 급여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구분 ② 임대 선택 시 임대차계약서 등 업로드 없이 최종제출 불가 <table border="1" data-bbox="890 824 1430 1227"> <tr> <td rowspan="2">급여 소득자</td> <td>자 가</td> <td></td> </tr> <tr> <td>임 대</td> <td>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입력</td> </tr> <tr> <td rowspan="2">사 업 소득자</td> <td>거 주 지</td> <td>자 가 임 대</td> </tr> <tr> <td>사 업 장</td> <td>자 가 임 대</td> </tr> <tr> <td></td> <td></td> <td>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입력</td> </tr> </table> ③ 임대차계약서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종으로 간소화 제출	급여 소득자	자 가		임 대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입력	사 업 소득자	거 주 지	자 가 임 대	사 업 장	자 가 임 대		
급여 소득자	자 가													
	임 대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입력												
사 업 소득자	거 주 지	자 가 임 대												
	사 업 장	자 가 임 대												
		임대차계약서 등 필수입력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지원일수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거주요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하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하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사업 신청 시 기입한 신청자 주민등록번호로 서울시 거주 여부 일괄 조회	
보험자격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입원연계 외래진료: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사업조건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가구원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배우자의 자녀	
소득·재산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 2024년 소득기준 일람표 참고 • 재산기준: 3억 5천만원 이하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소득·재산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재산기준: 일반재산만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월세: 주거용 임차보증금 80% 적용,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100% 적용 - 자가: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지원 제외	①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조산원, 요양병원 등) ②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③ 사망자	
중복수혜 제외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수혜자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	
신청 기한	퇴원일(입원·진료일),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 진료일, 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지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91,480원(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1일 89,250원(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연도의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적용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2023.10.4. 일부개정)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및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사업)소득자, 소득·재산기준 충족 	
지원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이하 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이하 검진) 	
지원일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진료, 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입원, 진료,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무한 근로소득자 또는 입원, 진료, 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업소득자(※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신청 자격	<p>[중복수혜 제외]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혜자</p> <p>※ 입원, 진료, 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p>
		<p>[신청 제외] ①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② 외국국적자 ③ 사망자</p> <p>-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p>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식: 지침 서식 64쪽 참고
	신청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일(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처리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30일(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구 분		주요 내용																		
선정 기준	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이 2024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2024년 소득기준 일람표]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원/월)</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1인 가구</th> <th>2인 가구</th> <th>3인 가구</th> <th>4인 가구</th> <th>5인 가구</th> <th>6인 가구</th> <th>7인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금액</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인 이상 가구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재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액 3억 5천만원 이하 ※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조사	조사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 ※ 통합조사관리팀 조사 결과에 따른 '공적자료' 기준 원칙 적용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에 소득·재산 조사 의뢰하여 조사 실시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유형: 현금 ● 지원액: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시간 2024년도(91,480원), 2023년도(89,250원) ● 급여기간: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전달체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① 접수</td> <td>➡</td> <td>② 심사</td> <td>➡</td> <td>③ 결정</td> <td>➡</td> <td>④ 지급</td> <td>➡</td> <td>⑤ 사후관리</td> </tr> <tr> <td>동주민센터 및 보건소</td> <td></td> <td>보건소</td> <td></td> <td>보건소</td> <td></td> <td>보건소</td> <td></td> <td>보건소</td> </tr>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수: 자치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동주민센터 접수 후 차세대 행복e음에 등록하고 서류 보건소로 이송) ②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접수시스템(sickleave.seoul.go.kr/mng)에서 접수 내역 확인 ※ 신청인은 신청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자 또는 대리인이 구비서류 준비하여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방문하여 접수 ※ 팩스·등기우편 가능 ③ 심사: 보건소에서 서류 취합 및 신청 자격, 지급 여부 심사 ④ 결정: 대상자 지급결정 결과 통보 ⑤ 지급: 대상자 신청 통장으로 현금 지급 ⑥ 사후관리: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부정수급 신고 접수 시 조회 	① 접수	➡	② 심사	➡	③ 결정	➡	④ 지급	➡	⑤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① 접수	➡	② 심사	➡	③ 결정	➡	④ 지급	➡	⑤ 사후관리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보건소												
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 지자체지원 탭 사용 																		
소요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비 100% 																		

I .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및 근거

- 가. 목적
- 나. 근거

2. 사업개요

- 가. 추진방향
- 나. 추진사항
- 다. 사업내용
- 라. 지원 전달체계

3. 용어정리

1. 사업목적 및 근거

가. 목적

- 근로하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공백에 대해 소득보장 차원의 급여를 지급하여 질병 완화 및 치료 기간 중 생계유지 가능
- 건강을 회복하여 경제 활동에 복귀, 노동생산력 향상

나. 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2019.1.3. 제정, 2019.9.26. 일부개정, 2021.1.7. 전부개정, 2021.9.30. 일부개정, 2023.10.4. 일부개정)

참 고 법 령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5조(취약계층 등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2. 주민의 복지증진

2.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 질병에 의한 소득감소는 유급휴가가 주어지지 않는 노동자층에 집중되고 있어 사회 보험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추진
- 노동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 시 ‘의료비 및 소득상실’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득보장 및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나. 추진사항

추진일정	내 용
'19.6.1.~	- 이후 발생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적용 - 연간 최대 11일 지원 [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1.1.1.~	- 입원일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시행으로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21.9.30. ~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확대 시행, 연간 최대 15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진료 1일(1인 1회, 시행일부터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을 실시한 날짜가 중복될 경우 1일만 지원 ※ 중복지원 불가: 의료비가 아닌 1일 생계비 지원임
'22.12.20.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온라인 접수시스템」 오픈

다. 사업내용

1) 신청기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지원 제외

- ①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치료목적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이더라도 지원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항 참고

- ②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 ③ 외국 국적자(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 ④ 사망자

※ 중복수혜 제외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수혜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중복지원 불가

2) 지원일수

- 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3) 지원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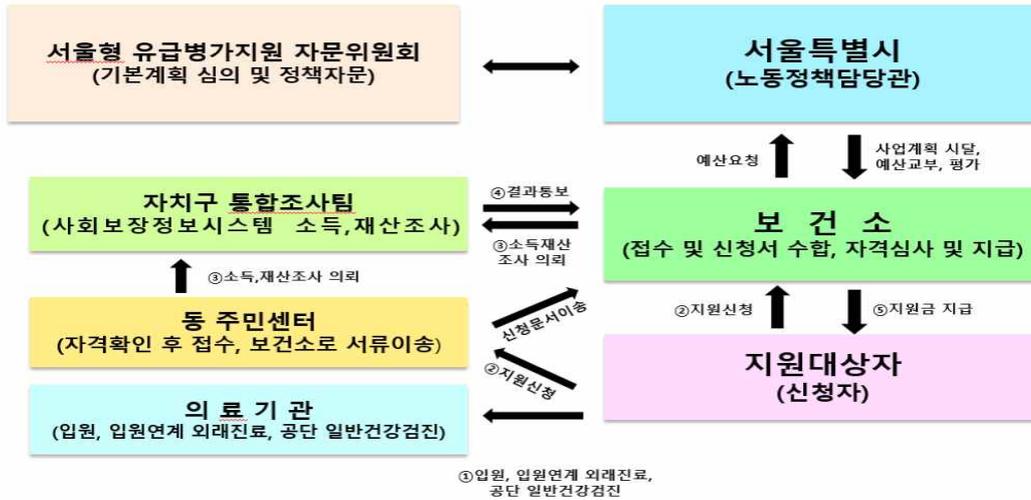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지원금액은 해당 실시 연도의 항목 및 서울특별시 생활임금(1일 8시간)으로 지급
 ※ 2024년도(91,480원/일), 2023년도(89,250원/일)
- 중복지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있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수혜자
 ※ 서비스 신청 시 중복지원 불가함 안내로 중복지원 사전 차단

4) 신청 및 처리기한

- 신청기한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암검진 제외)
- 처리기한
 - 보건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처리 후 지급하나, 소득재산 조사 등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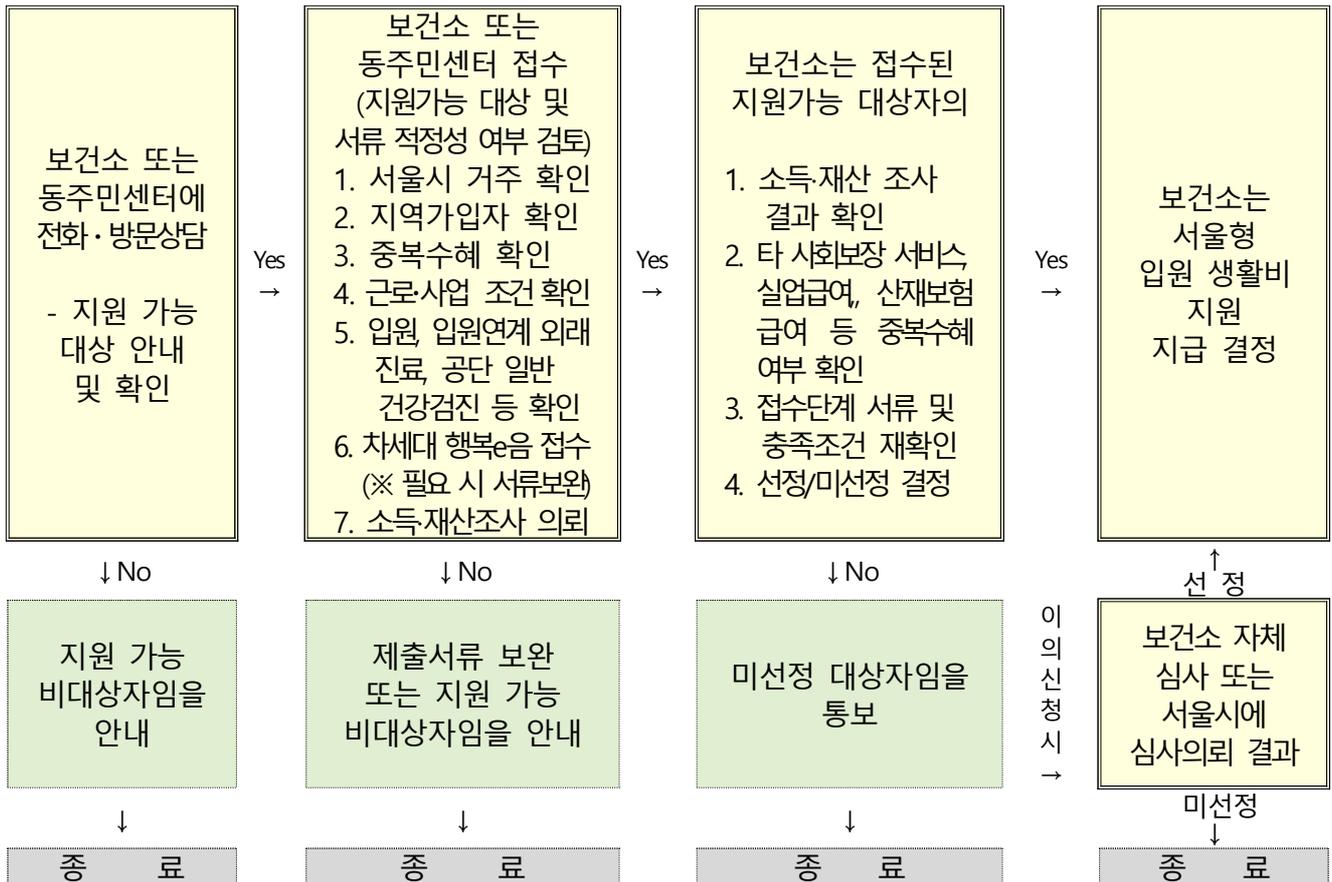
라. 지원 전달체계

[처리 절차]



마. 절차 단계별 확인 내용

○ 확인절차



○ 단계별 업무주체

절 차	내 용	업무주체
접수	<p>□ 지원가능 대상자 확인(신청가능, 신청불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와 필수 제출서류 확인 후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동의,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등 포함) - 서울시 거주기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확인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 표기)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한 의료기관 서류 확인 - 공단 일반건강검진: 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검진 후 약 30일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확인 가능) - 중복수혜 확인: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 근로(사업) 조건 충족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경력증명서 등 근로 확인 서류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폐업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폐업일 및 자격 여부 확인 - 차세대 행복e음 등록: 선정자는 전산입력 및 신청서와 구비서류 스캔하여 등록 ※ 신청서류가 보완·완료된 날을 신청일로 간주 ○ 접수완료 후라도 보건소에서 확정 심사 시 소득·재산 조회 및 중복수혜 조회에서 기준에 부적합 할 경우 미선정될 수 있음을 안내 	보건소·동주민센터
서류취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주민센터는 접수된 서류를 스캔하여 차세대 행복e음에 전산등록 후 접수서류는 보건소 담당부서로 이송 	보건소·동주민센터
심사·결정	<p>□ 지원확정 대상자 확인(선정, 미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내용: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 근로(사업) 조건충족, 중복수혜 등 재확인 - 소득·재산 조사 의뢰: 동주민센터·보건소 담당자는 차세대 행복e음에서 구청 통합조사팀으로 조사 의뢰 - 중복수혜 확인: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는 차세대 행복e음 소득조사 시 확인 - 입원(입퇴원 기간·질병명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제외),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및 적정성 여부 등 재확인 ○ 결정: 선정 또는 미선정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 	보건소(통합조사팀)(서울시)
지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인 계좌로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처리, 특별사유 시 60일 이내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지원 중복 재확인 	보건소
사 후 관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정수급 모니터링 	보건소

바. 수행기관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서울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업무 총괄 ○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본계획 심의 등) ○ 사업 추진내역 점검 및 지도·감독 ○ 사업 홍보: 120다산콜재단, 근로자 단체 사업 홍보 ○ 사업평가, 성과 공유 및 환류
자문위원회 (비상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지원계획 심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자문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총괄 ○ 신청자 상담 및 접수(차세대 행복e음): 소득·재산조사 의뢰 ○ 심사·지급결정 이의신청 자체 처리 ○ 사업 홍보 지역 홍보매체 및 지역 내 근로자 단체 대상 사업 홍보 ○ 사후관리 및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집행 ○ 사업실적 보고
동주민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상담 및 접수(차세대 행복e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의·접수 시 상담 · 접수 시 지원가능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차세대 행복e음) ○ 사업 홍보
자치구 통합조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 소득·재산 조사 실시
협력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복지정책과, 안심돌봄복지과: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권한 부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원: 차세대 행복e음 내 오픈마켓 사용협의 및 권한부여 등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사회보장제도(지원내용 등) 신설·변경 협의 및 승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시, 자치구 연계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에 대한 홍보 ○ 의료기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신청 가능 대상자에 대한 홍보 및 안내

3. 용어정리

1) 가구원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등본 조회 시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 확인 불가로 증빙서류 제출받아 확인
 - 가구원으로 포함하기를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포함 가능
(※ 법률혼만 인정, 사실혼 불인정)

가구원 제외 가능자(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가구원 제외 가능)

-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있는 사람
- (2) 외국에 최근 180일간 통산하여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있는(체류 중인) 사람
- (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4)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있는 사람(보장시설수급자)
-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30일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
- (8) 가족관계 해체 시

※ 증빙서류

사 유	증빙자료
(1) 군 복 무	- 복무확인서
(2) 해외이주	- 출입국사실증명서
(3) 복 역	- 수용증명서
(4) 보장시설 수급자	- 보장시설수급을 증명하는 서류
(5)~(6) 실종 및 행방불명	- 거주불명등록된 주민등록표
(7) 재외동포	- 재외동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가족관계 해체	-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지침 제16호 서식)

2)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건강검진)」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위하여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20세 이상인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암 검진을 제외한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말함

3) 근로소득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생계유지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연령은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를 따른다.
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 대상 근로기준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주요 근로소득자 예시 】

• 일용 근로자

일용근로는 근로를 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는 근로자로서, 특정 기간 동안 시급이나 일당을 받고 일하는 비정규직에 해당. 「고용보험법 제2조(정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에 따르면,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에 따르면,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를 일용직 근로자로 정의함.

• 임시근로자

고용노동부의 기준에 따르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되었거나, 고용계약기간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나 비자발적·비경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근로자를 임시근로자로 분류하고, 임시근로자는 회사내규에 의해 채용되어 있지 않고 퇴직금·상여금·각종수당에서 제외된 경우를 포함.

• 단시간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에 따르면,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르면,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함.

※ 참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란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의해 적용을 받는 사람으로,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가전제품설치·수리기사, 화물차주, 유통배송기사, 텔레마케터, 간병인, 요양보호사 등

※ 디지털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 근로 형태가 노무 제공자가 사용자에게 종속된 노동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며,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 앱), SNS 등 모바일로 배달대행업, 대리운전 앱 등을 통해 일하는 자를 말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예시(고용노동부)>

- 교육: 학습지도사,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방과후 교사 등
- 운송: 지입기사(레미콘트럭 등), 구난차기사, 기타 자동차 운전원(학원버스 운전기사 등), 공항·항만·시장·철도·창고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여가: 연극배우, 작가(방송작가, 사진작가 등), 애니메이터,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판매: 방문판매원, 영업사원, 대출·신용카드모집인, 수도·가스·전기 검침원, 간병인, 대리운전·퀵서비스기사, 가사·육아도우미 등
- 기타: 생활정보신문배포원, 의료판매중간관리자, 심부름기사, 목욕관리사, 북큐레이터, 통번역가, 애견미용사, 웨딩플래너, 음악가 등

4)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에 의거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중위값을 기준으로 100% 이하

5) 난민

- 「난민법 제2조(정의)」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31조(사회보장)에 의거하여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 대상자

※ 단, 난민의 경우 1인 가구로 처리

※ 제출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6) 사업소득자

-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는 자(농업, 임업, 어업, 기타 사업소득 등)를 말하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가능 대상기준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제외

- 「법인사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로 등록 의무사항이나, 이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법인사업자도 지역가입자로 될 수 있음.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많으며, 소득·재산조사 시 ‘법인재산’으로 개인재산 산정하기 어려움
-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로 근로로 보기 어려움

7)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함

※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6호): 시급 11,435원, 1일 91,480원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90호): 시급 11,157원, 1일 89,250원

8)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사업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하거나 건강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하는 제도

9)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단, 정신병원은 포함)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함

10) 임의계속가입자

-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이 퇴직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36개월이 되는 날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가능 대상자이며, 임의계속

가입자의 피부양자도 해당

제110조(실업자에 대한 특례) ①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2018. 1. 16.>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가입자(이하“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유지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신청 후 최초로 내야 할 직장가입자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난 날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 <신설 2013. 5. 22.>

11) 지원 가능 대상자, 지원 확정 대상자

- **지원가능 대상자:** 서울시 거주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를 지급받지 않고 신청기준을 충족한 자
- **지원확정 대상자:** 지원가능 대상자가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어 보건소에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 지급이 확정된 자

12) 재외국민 거주자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제2조1호」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재외국민 거주자”가 서울시 거주 자격 요건이 적합한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 신청 대상자

※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제2조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제2조)」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II. 신청 및 지급

1. 신청

- 가. 신청기준
- 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2.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가. 서류항목
- 나. 신청서류
- 다. 신청기한
- 라. 신청방법

3. 신청등록

- 가. 신청등록
- 나. 신청종결
- 다. 신청서류 보존기간

1. 신청

가. 신청기준

1) 신청자격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 사업소득자 중 「법인사업자」 및 「임대사업자」 는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연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참고] 신청자 연령: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준용**

「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 ① 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②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시민으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하고,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고 재산은 3억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이지요?

(답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에 대하여,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암 검진 제외) 1일에 대한 생활비로 최대 14일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질문3. 주소지는 서울시인데, 다른 시·도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입니다. 따라서 직장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거주 기준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서울시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질문4.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신청자가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는 서울시민이나, 타시도에 거주하더라도 실거주 확인을 하지 않음으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2) 가구원 기준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신청자 가구원 산정 기준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신청자 가구원 기준은 신청일 시점으로 산정합니다. 입원 당시에는 미혼이었으나, 신청 시에는 기혼으로 신청 시점에서 배우자 등 주민등록상 기준으로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포함하면 됩니다.

질문2. 한 가구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가구당 신청 인원 제한은 없으며 신청 자격이 된다면 한 가구에서 여러명 신청 가능합니다.

2) 기타 신청 가능자

(1) 기타 입원

- 장기기증 공여자로 입원 시 지원(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2) 난민인정자

「난민법 제31조(사회보장)」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등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

(단, 난민의 경우 1인 가구로 처리 ※ 제출서류: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3) 재외국민 거주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 제2조1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재외국민등록법(제2조)」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우리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 제출서류: 출입국사실증명서)

3) 지원 제외 대상자

-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아래 급여 수급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 ② 질병·부상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성형·출산·요양 등의 목적으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 (질병·부상 치료목적이더라도) 조산원, 요양병원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한 자
- ④ 외국 국적자(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는 지원 대상 아님)
 - 단, 난민으로 인정받은 외국인은 지원 가능(p.21 참조)
- ⑤ 사망자
- ⑥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것도 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의해,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을 제외하고 있으며, 그 외 한방병원, 치과병원, 정신병원 입원도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2. 미용, 성형, 출산은 비대상이나 질병치료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해당할까요?

(답변)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입니다. 단, 치료목적으로 입원하고 질병명이 확인된 경우 신청 자격 기준이 충족된다면 신청은 가능합니다.
(예: 출산 전 고위험 산모, 사고로 인한 성형수술 등)

질문3. 서울시 거주하는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외국인의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가구원 산출 시 신청자의 가구원이 「출입국관리법 제31조(외국인등록)」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한 사람인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는 할 수 있으며, 가구원 포함을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 시 포함 가능합니다.

질문4. 신청자가 신청 후 심사 중에 사망한 경우도 지급이 가능할까요?

(답변) 신청자가 신청 후 심사 중 사망한 경우 가구원이 신청할 때 지급 가능하며, 부양의무자(「민법」상 상속순위)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제출서류: 사망진단서, 의사소견서(무의식 및 혼수상태일 경우 등)

나.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 입원

- ‘입·퇴원 기간 및 질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증빙서류로 적정 여부 확인
(예시) 입·퇴원확인서, 입·퇴원요약지, 진료기록부, 소견서, 진단서 등 제출
- 장기기증 공여자 입원 및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입원(생활치료센터 입원 포함) 지원(※ 재택치료 불가)
-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해당별 지급(※ 각 해당 연도 기준 생활임금 지급)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여부
예시1	① 입·퇴원: '23.12.28.~'24.1.10.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23.12.1. ③ 입원연계 외래진료: '24.1.25.	- '23년도: 입원 4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1일=총 5일 지원 - '24년도: 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1일=총 11일 지원

- 연도별 최대 13일 지급하나 장기입원 등 계속 지원이 어려워 **'24년도 1월 1일 기준**
 - '23.10.26. 이전 입원: 1개 연도('23년도) 지급, '24년도 미지급
 - '23.10.27. 이후 입원: 2개 연도('23년도, '24년도) 지급
- ※ 입원 전 근로기준(전월 90일 동안 24일 근로) 반영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여부
예시1	① 입·퇴원: '23.10.26.~'24.1.25.	- '23년도: 입원 13일 = 총 13일 지원
예시2	① 입·퇴원: '23.10.27.~'24.1.25.	- '23년도: 입원 13일 = 총 13일 지원 - '24년도: 입원 13일 = 총 13일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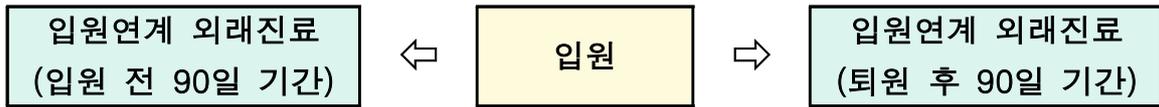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자주하는 질문

질문1. 당일 입원했을 경우도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예, 6시간 이상 입원하여 의료기관에서 입원으로 확인한 경우 가능합니다.

2) 입원연계 외래진료



-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90일 기간) 지원은 ①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②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도 인정
 - ※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 제출
(예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단독 신청 시, 입원은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이므로 반드시 입원서류 통한 입원 확인(※ 입원 신청 건이 없으므로, 근로·사업 및 소득·재산 기준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 (예시) 입원 당시 직장가입자였으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 지역가입자
-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여부
예시1	① 입·퇴원: '24.1.9.~'24.1.11. ⇒ 직장가입자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 '24.2.8. ⇒ 지역가입자	① 지원일수: 입원 신청 불가 ② 지원일수: 입원연계 외래진료 1일 신청 가능
예시2	① 입·퇴원 : '23.10.11.~'23.10.20.(10일)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 '23.9.5.(1일), '23.10.28.(1일), '23.11.28.(1일)	① 지원일수: 입원 10일 신청 가능 ② 지원일수: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신청 가능 ⇒ 총 13일 지원 가능
예시3	① 입·퇴원 : '23.12.1.~'23.12.10.(10일) ② 입원연계 외래진료 : '23.11.1.(1일) : '24.1.10.(1일) : '24.2.10.(1일)	입원 기준으로 입원연계 외래진료 '24년도 신청 시, - 지원일수: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신청 가능 ⇒ '24년 최대 13일 - 입원연계 외래진료 2일 = 잔여 11일 ※ 잔여 11일은 '24년도 새로운 입원 발생 시 신청 가능 (예 입원 11일 또는 입원 10일+입원연계 외래진료1일 가능)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로 입원 신청기준과 같으며, 입원연계 외래진료도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2.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일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 1건당 최대 3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질문3.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서류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으로 동일 질병명(질병코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질문4. 입원 신청 후 지급은 받았고, 추후에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신청한다면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면 되나요?

(답변)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로 1차로 입원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후, 추후 입원연계 외래진료를 신청할 경우 '근로·사업일 및 소득·재산'에 대해 1차 입원 시 신청 기준을 적용하며 그 외 입원연계 외래진료 등 해당서류를 제출 하면 됩니다.

(※ 단, 가구원 변동 또는 이사를 한 경우 소득·재산 조사는 재실시 합니다.)

질문5. 입원은 신청하지 못하고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한다면 서류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입원신청은 하지 않았고,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이므로 입원 확인 서류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해당하는 서류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점으로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준 서울시민, 지역가입자격 여부, 근로·사업일수, 소득·재산조사 등 신청기준 모두 확인 및 적용합니다.

(※ 입원연계 외래진료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의 예: 입원 시에는 직장가입자였으나, 입원연계 외래진료 시에는 지역가입자 등)

3) 공단 일반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신청자가 받은 결과통보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검진결과 [약 1개월 이후] 확인 가능) (※ 암 검진 제외)
- 신청기한: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로부터 180일 이내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공단 일반건강검진 재검진이나 치과검진 등 일반 건강검진의 일부만 받은 경우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회씩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중 1차로 실시하는 기본검진만 해당하며, 그 외 검진(암검진, 치과진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라면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신청 자격요건이 있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여 신청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3.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자’ 의 경우도 신청 자격이 될까요?

(답변) ‘임의계속가입자’도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여 신청 가능하며, ‘임의계속가입자의 피부양자’도 지역가입자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본 지침 용어정리에서 ‘임의계속가입자’ 참고)

다.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1) 근로소득자

- 신청자가 제출한 근로 확인 서류에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1개 사업장 연속근로 여부 무관)
- 30일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 기준 사유: 2019. 11. 1. 시행된 고용보험법에서 개정된 실업급여 기준을 참조·준용(월 10일 ⇒ 월 7.5일)

(개정 전) 실직 직전 18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 ⇒ 평균 월 10일
(개정 후) 실직 직전 24개월 동안 유급 근로일이 180일 이상 ⇒ 평균 월 7.5일(≒8일)

2) 사업소득자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는 제외(지침16 쪽 참고)
-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사업장 유지 여부 확인,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텍스에서 확인(휴업은 확인하지 않음)
※ 폐업날짜 확인방법: 국세청 홈텍스-사업자등록-사업자 조회-사업자등록상태 조회
<예시: 사업자등록증 폐업일 경우>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tax website interface. At the top, there are navigation links like 'HOME', 'My NTS', and '로그인'. Below that, there's a search bar and a menu with '조회/발급', '민원증명', '신청/제출', '신고/납부', '상담/제보', and '세무대리인'. The main content area is titled '사업자등록상태조회' and contains a search box for '사업자등록번호' and a '조회하기' button. Below the search box, there's a table with the following content: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상태
1234567890	폐업자 (과세유형: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폐업일자: 2010-11-08) 입니다. * 과세유형 전환된 날짜는 1994년 12월 30일 입니다.

Below the table, there's a section titled '이용안내' (Usage Guide) with several bullet points explaining the search results and providing examples for different business statuses.

근로 및 사업 조건 사례

구분	입원기간	근로·사업 일수	여부	사 유
사례1	2024.5.10. ~2024.5.15. (기준: 입원 5월)	[근로소득자] 2024년 2월(7일)+3월(8일)+4월(15일) ⇒ 90일간 총 30일 근로	적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90일 동안 근로 일수 24일 이상으로 적합
사례2	2024.5.10. ~2023.5.15. (기준: 입원 5월)	[근로소득자] 2024년 2월(6일)+3월(9일)+4월(6일) ⇒ 90일간 총 21일 근로	부적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90일 동안 근로 일수 21일, 부적합
사례3	2024.5.10. ~2023.5.15. (기준: 입원 5월)	[사업소득자] 2024년 2월 29일 사업장 폐업 ⇒ 90일 총 61일 사업장 유지	적합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일 전월 90일 동안 사업장 45일 이상 유지, 적합

근로 및 사업 일수 참고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자격 변동 시 지원 가능
 -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기준에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90일 간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로, 사업소득자 ⇒ 근로소득자」 간 변동
-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 간 자격 변동 시 근로일수 산정식
 - 사업기준 근로일수가 90일간 근로소득자는 24일, 사업소득자는 45일로, 이를 3개월(90일)로 나누면, 근로소득자 24일/3개월(90일)=8일, 사업소득자 45일/3개월(90일)=15일로 산정. 이를 각 해당하는 월(일) 근로·사업 일수를 합산하여 총 근로 일수 산정 함.

○ 근로일 수 산정 예시

해당 월	6월	7월	8월	총계	신청자 총 근로일수	비고
근로일수	5일	0일	0일	5일	* 총 일수 : 48일 - 근로: 5일 - 사업: 43일	근로일수 기준 38일에 신청자 근로일수 48일로 "근로일수 충족"
사업일수	0일	31일	12일	43일		
근로일수 기 준	8일 (24일/3월)	15일 (45일/3월)	15일 (45일/3월)	사업기준 근로일수	* 총 일수: 38일 - 근로: 8일×1월=8일 - 사업: 15일×2월=30일	

(예시) 근로: 8일×1개월=8일, 사업: 15일×2개월=30일 [총 일수: 38일]

- 신청자의 근로일수가 90일간 근로+사업자일 경우, 신청자의 근로일수와 사업일수를 총합한 일수가 신청자의 근로일수가 됨. 따라서 위 경우 사업 신청기준 근로일수는 38일이 되고, 신청자의 근로+사업 근로일수는 48일이 됨으로 이 경우 근로일수 충족 됨.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가요?

(답변) 신청 기준에서 '사업소득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의 경우도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사업장 유지 등 신청 기준에 적합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만 해당하며, '법인사업자나 임대사업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2. 근로 확인 시 전월 90일 중 30일(예:6월)은 사업자이고, 60일(예:7월~8월)은 근로자일 경우 신청 가능할까요?

(답변) 신청은 가능하며, 각각 근로 기준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상세한 내용은 지침 28쪽 참고

질문3. 식당을 운영하는데 사업주는 남편이고 부인, 자녀 등 가족이 일할 경우, 부인이나 자녀가 입원 시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가족 간 사업을 운영 시에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고 함께 근로하는 가족들이 신청자격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가능 합니다.

질문4. 어르신 공공일자리 사업 참여자나 초단시간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일 근무시간에 대한 별도기준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단, 90일 동안 실 근로 일수가 24일 이상 확인되어야 하며, 휴일에도 근로하였다면 근로 일수로 포함하여 산정 가능합니다.

질문5. 일자리를 얻지 못해 현재 소득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신청 자격 기준에 충족한다면 현재 소득과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6.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자격 기준에 충족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은 필수입니다.

질문7.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와 인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1. 근로자로 인정하는 경우

- ① 노인 일자리사업
- ② 노점상
- ③ 음식점에서 서빙이나 설거지 등
- ④ 폐휴지 수거
- ⑤ 편의점, 카페 등 아르바이트
- ⑥ 퀵서비스 배송, 택배 등
- ⑦ 가족 명의 사업장에서 근로
- ⑧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가족돌봄
- ⑨ 종교직 관련(목사, 신부, 승려 등)
- [※ 법인대표는 제외, 개인사업자 및 종교기관에서 근로한 경우 가능]
- ⑩ '1인 창작자(크리에이터 등)' 로 유튜브 방송 등을 하는 경우

2.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 ① 가족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부모님·손자녀·조카 등' 가족돌봄을 할 경우
- ② 국비지원 사업으로 직업훈련교육을 받을 경우
- ③ 병역의무자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등' 군복무 중인 경우

2.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가. 서류 항목

구분		서류항목
신청	신청서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신청자 제출 서류	입원·진료·검진 증빙 서류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증빙 서류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필수 제출서류) ⇒ 근로일수 확인 및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확인(※ 제출 서류 없음)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필수 제출서류) ⇒ 소득 조사 결과 "0원"일 경우 소득내역 적용
	소득·재산 조사	· 소득조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 결과 회신 시, 소득조사 결과 "0원"일 경우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내역' 적용 · 거주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해당자):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기타	· 가족관계 해체사유서(해당자)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신용불량 등 통장 사용불가 시, 해당자)
	대리 신청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신분증 사본, 대리인 위임장(제4호 서식)
보건소 담당자 조회 서류	행정정보공동 이용 조회	· 주민등록표 등본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지역가입 자격 여부 확인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검진 후 1개월 이후 조회 가능) · 입금계좌

나. 신청 서류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				
(2) 신청기준 확인을 위한 신청인 제출 및 공무원 확인 서류				
(2)-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 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필요서류		민원인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주민등록표 등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 후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시·도로 전출 시 지급 불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시·도로 전출 시 차세대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불가 - 소득·재산 조사 완료 후, 지급 절차만 남은 상태에서 타·시도 전출 시에는 지급 가능 ▶ 신청 후 심사·지급이 완료되지 않았으나, 서울시 관내 타구로 전출 시에는 지급 가능 <p style="text-align: center;"><예 시></p>				
입원(검진)기간	서울시 거주	신청일	심사종료(지급)일	신청·지급 가능 여부
2024.2.6.~2.10.(5일)	2024.1.5. ~ 현재 ※ 심사 중 2024.3.22. 서울시 타 구 전출	2024.3.8.	2024.4.10.	가 능
2024.2.6.~2.10.(5일)	2024.1.5. ~ 2024.3.22. ※ 심사 중 2024.3.22. 타 시도 전출	2024.3.8.	2024.4.10.	불가능
(2)-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계속가입자 신청 가능 ▶ 입원기간 중 건강보험자격이 변동되었을 경우, 지역가입자인 입원날 수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역 → 직장, 직장 → 지역 자격변경일은 민원인 유리한 날짜로 반영 <p style="text-align: center;"><예 시></p>				
입원(검진)기간	건강보험자격		지급가능일	
2024.2.6.~2.10.5일	2024.2.6.~2.8.(3일)	지역가입자	3일	
	2024.2.9.~2.10.(2일)	직장가입자	불가	
2024.2.20.(1일)	2023.2.20.	직장 → 지역으로 변경	1일	

(2)-3. 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
 사업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자 유지한 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근로소득자 (해당 1종)	①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② 고용임금 확인서(고용주 발급)	○	
	③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신청인 작성) ※ 필수서류	○	
	④ 기타 경력, 재직, 위촉증명서 등(신청인 제출)	○	
사업소득자	① 사업자등록증(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
	②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신청인 작성) ※ 필수서류	○	

※ 해당 1종이나 ①②④번 해당자의 경우 ③번 서류 추가로 받아야 하며, ③번 서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③번 서류만 받습니다.

* 근로확인 서류 중 ①②④번은 공적서류로 우선이나 사업특성 상 ③번 서류는 ①②④번 서류 발급이 어려운 근로자를 위한 서류임.

- ▶ ①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 고용임금확인서(고용된 사업장의 사업주 발급[서식 제2호])
-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의 경우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회사 발급 서류 제출
- ▶ 근로기간 내 직장가입자였을 경우 경력증명서 등으로 확인
- ▶ 특수상황에 의한 근로상황 시 근로일수 적용 : 신청자의 직장 근로상황에 따른 일시적 방학, 휴업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경우(예: 문화원, 학교 등)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근로 확인 처리

※ 참고: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 간 변경 시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포함 90일 간 근로소득자⇒사업소득자로, 사업소 ⇒ 근로소득자 간 변경되어도 지원 가능(※ 상세내용은 **지침 31쪽 참고**)

(2)-4.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입원 치료	의료기관 발급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질병명 증빙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택 1종)	건강검진 확인서	○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

- ▶ **장기기증 공여자로 입원 시 지원(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
- ▶ **입원의 경우 입·퇴원 기간과 질병명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시) 입·퇴원 확인서, 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요약지 등
 -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조례**에 의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단, 정신병원은 포함)
- ▶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90일)의 경우** ①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 ②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도 지원 가능
 - ※ 동일 질병일 경우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 ※ 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동일질병(질병코드)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발급 서류. 입원확인 서류에서 외래진료 내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인정
 (※ 참고: 신청인이 의료기관 증빙서류 제출 후 보완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담당자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의료기관에 연락하여 질병명 또는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임이 확인된 서류에 기록을 남겨두고 처리)
 - ① 1차 입원만 신청 시: 기존 입원 신청 서류와 동일
 - ② 1차 입원 신청 +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인 서류
 - ③ 1차 입원 신청 후 2차로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신청서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인 서류
 - ④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시: 입원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인 서류
-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시기는 검진 후 약 1개월 이후 가능(※ 공단 일반건강검진 중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 등은 미 해당)

(2)-5. 신청자 및 가구원의 재산확인 서류(해당자) ※ 본인 또는 가구원 소유인 경우 불필요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인 및 가구원명의로의 거주지 및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서식 제11호]	○	

- ▶ 자가 거주지·사업장이 아닌 경우
- 신청자 및 가구원이 보유한 임대차계약서 일체(※ 확정일자 받지 않은 임대계약서도 인정)
- 임대차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부

[참고]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전대차 관계 확인서

(2)-6. 가족관계 해체 시(해당자)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가족관계 해체사유서[서식 제17호]	○	

- ▶ 신청자 가구원 중 실제 가족관계이나 사실상 가족관계가 해체되었을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인정해 주도록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

- 예시1) 신청자가 이혼 후 자녀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나 이혼한 배우자와 거주하여 신청자와는 연락이 단절된 경우
- 예시2)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표 상에 있으나 배우자 행방이 묘연 또는 가족관계가 해체된 경우

(2)-7. 기 타		
필요서류	민원인 제출	행정정보공동이용
난민 인정자	○	
재외국민 거주자	○	
본인 통장계좌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서식 제5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민 인정자: 난민인정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재외국민 거주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수급은 반드시 대상자 명의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청자가 신용불량 등으로 본인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임대차 계약서가 만료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유효기간이 만료된 임대차계약서는 무효이나,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2개월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주택 임대차보호법」제 6조)

질문2. 근로확인 서류 중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가 필수서류라면 이 서류만 받으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하나의 제도로 공적서류 제출이 원칙이나, 사업 특성상 노동약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적서류 제출이 어려운 신청자가 많아 신청자 작성 서류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적서류를 제출이 가능한 경우 공적서류를 받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참고] ①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조회) ② 고용임금확인서(고용주 발급) ③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신청인 작성 필수서류) ④ 기타 경력 증명서 등(직업에 따라 제출이 가능한 해당자)

질문3. 근로소득자는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를 유지”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근로 확인을 위해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근로 확인 서류의 경우 ① 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근로
 복지공단 발급)’로 확인[공적서류] ② 고용임금확인서[서식 제2호] ③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서식 제3호] 순으로 해당사항에 따라 받습니다.

다. 신청기한

1)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퇴원일)은 산입하지 않음
- ※ 종료일이 토·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
- ※ 입원 기간 중에도 최대 지원일수 넘었을 경우 신청 가능

【 예 시 】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일로부터 신청기한 산정 예

입원일	퇴원일	신청 가능일(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2024.6.5.~6.8.(4일)	6.8.	2024.6.8.~2024.12.5.까지

· 신청종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의 신청기한 산정 예(그 다음 평일까지 신청)

입원일	퇴원일	신청 가능일(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2024.4.11.~4.13.(3일)	4.13.	2024.4.13.~2024.10.10.(화)까지
2024.4.10.~4.12.(3일)	4.12.	2024.4.12.~2024.10.9.(월)까지 ※ 신청종료일(2024.10.9.)이 공휴일(한글날)이므로 2024.10.10.(화)까지 신청 가능

2) 공단 일반건강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에 의거, 180일 기간 산정 시 초일(검진일)은 산입하지 않음

【 항목별 사례】

<p>① 이전 신청 시 선정되어 지급된 자가 새로운 건(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재신청 했을 경우</p>					
<p>- 이전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등 지원 가능 대상자격 재확인 ▶ 소득·재산 조사 생략 가능: 이전 신청 시 조사된 소득·재산 내역 같음 ※ 단, 가구원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소득·재산 조사 재실시 <p>- 이전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후 신청 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등 지원 가능 대상자격 재확인 ▶ 새로운 신청 시점에서 소득·재산 조사 재 실시 <p style="text-align: center;"><사 례></p>					
입원일	1차 신청일	1차결과	공단 일반건강 검진일	2차 신청일	소득재산 조사
2024.1.2.~1.6. (3일)	2024.1.25.	선정	2024.3.17.	2024.7.24. 이내	생략 가능 (180일 미경과)
				2024.7.25. ~9.13. *9.14.부터 신청기한 도과	조사 실시 (180일 경과)
<p>②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신청 시</p>					
<p>- 차세대 행복e음에 가구원 2명 이상 동시 접수 불가로 가구원A 먼저 신청·접수. 소득재산 조사 후 완결처리</p> <p>※ 단, 가구원 A, B 모두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급여 중복수혜 여부 조회는 가능</p> <p>- 가구원A 심사 종료 후 가구원B에 대한 차세대 행복e음 접수, 소득재산은 가구원 B와 동일하므로 미실시하고 심사·종결 처리(단, 가구원 변동 시 재조사)</p>					
<p>③ 가구원 A, B가 순차적으로 신청한 경우</p>					
<p>- 가구원A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내 가구원 B가 신청 시 : 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단, 가구원 변동 시 재조사)</p> <p>- 가구원A 신청일로부터 180일 이후에 가구원 B가 신청 시 : 소득재산 조사 실시</p>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이며, 신청은 어디에서 하는지요?

(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기간은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퇴원 일로부터, 공단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접수 홈페이지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질문2. 2023년도에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2024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1년 단위 사업으로 해마다 새로운 건으로 신청 자격이 된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단, 신청하여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 동일 건으로 재신청 불가합니다.

질문3.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요?

(답변) 신청인께서 신청하였으나 미비된 서류가 있어 서류 보완을 요청받았거나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경우, 모든 해당 서류를 제출한 날이 신청일이 됩니다.

질문4.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하면 소득·재산 기준이 가구원 합산으로 가구원의 소득·재산 조사를 하던데 이에 대해 가구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시 가구원 동의없이 조사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및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 신청방법

1) 신청인 당사자 또는 신청인이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

- 본인신청: 지원대상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
- 대리신청: 지원대상자의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 신청인이 신청하는 경우
 - ※ 대리인 신청 시: ① 대리인 신분증 ② 위임자(대상자) 신분증 사본
 - ③ 위임장[서식 제4호] 제출

2) 신청방법

- 온라인(PC 또는 모바일) 신청
 - ※ 신청홈페이지(sickleave.seoul.go.kr) 접속 → 회원가입 및 신청
-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직접 신청
- 우편신청: 방문 접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자치구로 등기우편 신청 가능
 - ※ 서류미비 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서류보완 제출해야 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처리

3) 안내사항

- 타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심사 중인 경우 차세대 행복e음에 접수 불가하므로 신청인에게 사전 안내 후 심사 중인 사회보장서비스 종료 후 입력
- 한 가구에서 2명 이상 동시에 신청 시 신청은 가능하나, 차세대 행복e음에서 한 가구원으로 확인되어 2명 중 1명을 먼저 신청 접수 후 종료하고 다른 1명에 대해서는 추후 신청이 가능
- 이의신청(※ 참고 42쪽)

4) 유의사항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 시 가능
 - 신청인이 신청 후 처리 중에 취소 요청한 경우: 서류 반환(사본 보관)
 - 신청결과 미선정된 경우 요청한 경우: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만(예:입원, 진료, 검진서류) 반환하되 사본 보관

3. 신청등록

가. 신청등록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담당자는 대상자가 제출한 신청서 내용 및 제출서류를 스캔해서 차세대 행복e음에 등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 시 신청서에 출력분 첨부하여 차세대 행복e음에 등록
 - ※ 타 사회보장서비스 신청·심사 중인 경우 차세대 행복e음에 접수 불가하므로, 민원인에게 사전 안내 후 심사 중인 사회보장서비스 종료 후 입력
- 현장에서 접수한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시스템(sickleave.seoul.go.kr/mng)에 등록

나. 신청종결

- 신청 이후 지급결정이 통보되기 전에 신청인(또는 대리인)의 취하 요청 등 지급 신청 종결 필요 시
- 신청 후 30일 이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추후 보완 시 재등록 가능

다.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차세대 행복e음으로 전산적 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신청서류는 보건소에서 보관함

III. 조사 및 선정

1. 조사

가. 소득·재산조사 절차

나. 소득·재산조사 기준

2. 심사

가. 자격심사

3.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나. 중복지원 제외

Ⅲ

조사 및 선정

1. 조사

가. 소득·재산조사 절차

- ① 동주민센터는 신청 시 자격 확인 후 접수, 차세대 행복e음에 신청 등록 및 자치구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조사 의뢰하고 신청서류는 해당 보건소로 서류 이송
- ② 보건소는 신청 시 자격 확인 후 접수, 차세대 행복e음에 신청 등록 및 동주민센터에서 등록한 신청자 확인 후 자치구 통합조사팀에 소득·재산조사 의뢰
- ③ 구청 통합조사팀은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실시 후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보건소에 회신
- ④ 보건소는 통합조사팀으로부터 회신받은 소득·재산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심사 기준에 적합 여부를 판단 및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 및 지급

나. 소득·재산조사 기준

✓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동시 충족 시 지급대상자 확정

구 분	세부내역
기본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및 가구원의 소득·재산의 합<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원 기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신청인의 가구원이 외국인일 경우 제외할 수 있으며, 가구원으로 포함하기 원하는 경우 증빙서류(외국인 가구원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할 경우 포함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재산 조사 및 산정 기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하는 시점의 조사 결과로 적용 함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 시, 신청인이 작성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소득내역]도 소득에 반영
- 단, 통합조사팀에서 회신한 차세대 행복e음 공적자료의 소득조사 결과가 “0 원”으로 나올 경우, 고용임금확인서[서식 제2호]나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서식 제3호]에 신고한 ‘소득내역’ 적용
- 통합조사팀에서 실시한 소득조사 결과 공적자료에서 사업소득자의 2년전 사업소득액이 회신된 경우, 신청인이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동주민센터 발급)’으로 반영을 요구하면 신청인이 이를 발급받아 제출하고 자치구 담당자는 이를 확인 후 적용
- 통합조사 결과 사업소득자의 2년전 사업소득액이 회신 될 경우, 신청인이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통해 1년전 사업소득액 반영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으로 적용**
- **입원 지급 후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근로·사업, 소득·재산’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
-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시: ‘근로·사업, 소득·재산’ [외래진료 신청 시 기준 적용]**

○ 기준: 당해 연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8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소득 조사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 내용: ‘소득’은 실제소득만 의미

소득 = 실제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 ① 근로소득: 상시근로자소득, 일용근로자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②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③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④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공적이전소득: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

**재산
조사**

○ 기준: 신청자 및 가구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재산 시가
표준액 합산 3억 5천만원 이하

○ 내용: '일반재산'만 적용

- 일반재산 ① 토지, 건축물, 주택 ② 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③ 항공기 및 선박 ④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
⑤ 입목재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 금융재산 및 자동차 미포함

※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한 경우는 미포함(※ 금융재산 미포함으로 '부채'도 미포함)

※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계약금액이 아닌 실제 납입금액만 적용

○ 산정방법

① [전세·월세] 주거용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80% 적용

사업장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100% 적용

※ 주택은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나 전월세는 시가로 산정됨에 따른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시가표준액과 시세 간 차이를 반영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② [자가 소유] 본인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족, 친척, 지인의 집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본인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적용

- 2주택 이상 보유, 각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합산하여 재산액 산정

③ 주택 소유자가 타 주택에서 임차 거주 시 적용

- 1주택: 소유주택 공시지가, 다주택: 소유주택 공시지가 합산

※ 자문회의 결과 반영

④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서식 제11호]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고시원 여인숙 등 계약서 작성하지 않는 곳에 거주하는 경우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에 곤란한 경우

⑤ 사망자의 재산 산정방법

- 가구원 재산 산정 시 배우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민법의 법적 상속분(제1009조) 기준으로 해당 금액을 산정
 - 남편이 사망한 경우(상속인: 배우자, 아들, 딸):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되어 1.5이며, 아들과 딸의 상속분은 각 1이 됨
- ※ 예시: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1억원일 경우: 배우자 1억×3/7(4,285만원), 아들 1억×2/7(2,857만원), 딸 1억×2/7(2,857만원)으로 산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신청 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관련 참고

※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시 가구원 동의없이 조사 가능함으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추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및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처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구원 동의없이 조사 가능

자주하는 질문

질문1. 타 사업 서비스 신청으로 최근 소득·재산조사를 시행했을 경우라도 소득·재산 조사를 해야 할까요?

(답변) 타 사업 서비스 신청으로 소득재산조사를 한 것으로, 본 사업에서 신청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기준 및 절차에 따라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질문2.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의 공적자료를 우선 반영하여 소득·재산 조사하는데 신청인이 현재 소득과 상이하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답변)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 조사 시 실시간 조사 및 반영은 어려워 조사 시점의 조사 결과로 신청인의 현재 소득과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이 최근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동주민센터 발급 가능) 후 제출하여 증빙할 경우 반영 가능합니다.

질문3. 신청서류에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가 필수서류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통합조사팀에서 조사한 소득·재산 공적자료에서 신청인 소득이 ‘0원’으로 확인 된 경우, 신청인의 소득 반영을 위해 신청인이 작성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에 기재된 ‘소득내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소득조사 결과 ‘0원’이 나올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 추후 소득조사 결과 ‘0원’이 나왔을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로 받을 경우, 민원발생 및 행정낭비 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것입니다.

질문4. 신청자와 가구원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 시 임대차 계약서,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등은 어떤 경우에 제출하는 것입니까?

(답변) 신청자와 가구 구성원에 대한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적용하기 위한 것으로,
○ 자가주택이 아닌 경우: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제출하여 확인(사본 보관)
○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서식 제11호]
- 무상으로 주거지, 사업장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계약서 작성이 없는 곳에 거주(고시원, 여인숙 등)
- 신청자가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질문5. 재산이 일반재산만 적용되는데 혹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은 경우도 대출금과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만을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는 건가요?

(답변) 일반재산만 적용하고 금융재산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더라도 대출금과 상관없이 전·월세 보증금만 일반재산으로 산정하며,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금액의 80%만 적용합니다.

질문6. 신청자가 새로운 건으로 2차 신청 시 신청자격 및 소득·재산 조사 실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① 이전에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새로운 건으로 신청 시,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일수 등 신청 자격 재확인하나, 소득·재산 조사는 이전에 신청한 조사결과로 같음하여 생략이 가능하나 가구원 변동 시에는 소득·재산 내역도 변동 가능하여 이 경우 소득·재산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② 이전에 신청한 날로부터 180일 이후 새로운 건으로 신청 시, 서울시 거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근로 일수 등 신청 자격 재확인 및 소득·재산도 재조사 합니다.

2. 심 사

가. 자격심사

심사내용	확인	내용	비고
서울시 거주 여부	주민등록 등본 확인 행망 조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일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행망 조회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 실시 기간동안 지역가입자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실시 여부	신청인 제출한 의료기관 발급 서류 (※나. 신청서류 참고)	<p>[입원] 질병명 및 입퇴원 기간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p> <p>○ 대상범위: 의료기관 입원 시 질병코드가 입력된 경우 해당됨</p> <p>- 장기기증 공여 입원 지원 가능(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 명시 필요)</p> <p><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p> <p>※ 「의료법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요양병원 제외 (단, 정신병원 포함)</p>	
		<p>[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 전·후 90일)의 경우 ① 입원과 동일 진료과목 ②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를 받은 경우 지원 가능 [※ 동일 질병일 경우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서류) 제출 시 가능]</p>	<p>※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은 1차 입원 신청 시 기준 적용</p>

<p>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여부</p>	<p>공단 검진 확인서, 공단 검진결과 통보서 또는 행망 조회</p>	<p>행정정보공동이용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가능 시기는 검진 후 약 1개월 이후 (※ 공단 일반건강검진 중 암검진, 치과검진, 2차 검진 등은 미 해당)</p>	<p>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p>
<p>근로소득자 근로 일수 및 사업소득자 사업장 유지 확인</p>	<p>고용보험일용 근로내역 확인 또는 신청인 제출서류</p>	<p>근로소득자: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자(실 근로일수 산정)</p>	<p>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p>
	<p>행정정보공동 이용 조회</p>	<p>사업소득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번호 조회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자 ※ 휴업은 고려하지 않음</p>	<p>[제외]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p>
<p>중복수혜 여부</p>	<p>차세대 행복e음, 생활복지통합 정보시스템 조회</p>	<p>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 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p>	

자주하는 질문

질문1. 가족 중 각각 동시에 신청할 경우 차세대 행복e음 시스템 처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가족구성원 중 부부 또는 자녀 등 가구원이 동시에 신청한 경우, 차세대 행복 e음에서는 한 가구원으로 보기 때문에 두 사람 중 1명을 먼저 신청 접수 및 종료하고, 다른 나머지 1명에 대해서 접수 및 심사 처리합니다.

(※ 다른 사업 접수 또는 심사 중일 경우, 심사 종료 후 차세대 행복e음 접수 가능)

3. 선정기준

가.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해당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금액	2,228,445	3,682,609	4,714,658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나. 중복지원 제외

- [총 6종]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중복지원’에 해당하는 타 복지사업 외 중복지원 가능
(예: 한부모가족 양육지원비, 초중고 교육비지원,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 암치료비 등)

1) 타 사회보장 서비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차세대 행복e음에서 조회 및 확인]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② 서울형기초보장 ③ 국가형긴급복지

- 차세대 행복e음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지급 여부 조회

※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신청 후 선정될 경우, 신청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급여를 지급하여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월에 대한 급여를 소급하여 지급받은 경우도 중복수혜에 해당 함으로 확인 필요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 및 확인]

- ④ 서울형 긴급복지

-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지급 여부 조회

2)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중복지원 여부 확인

[차세대 행복e음에서 조회 및 확인]

● ① 산재보험급여 확인

- 차세대 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시 ‘산재보험’ 소득 항목 여부 조회하여 검색되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수급 내역 확인 필요
⇒ 필요 시 신청자가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보험급여 지급 확인원
- 발급방법: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본인 확인 후 팩스 발급

● ② 실업급여 확인

- 차세대 행복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시 ‘실업급여’ 소득 항목 여부 조회하여 검색되면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월에 수급 내역 확인 필요
⇒ 필요시 신청자가 증빙서류 제출
- ※ 실업급여는 첫 달에 한하여 일할 계산되어 지급함으로, 첫 달에 지급한 날짜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급 가능
(예: 실업급여 신청일을 시작으로 첫 달 일수로 계산 됨. 신청인이 12.15. 신청할 경우 첫 달만 12.15~12.31일 지급하고 이후 월 지급)
- 증빙서류: 취업희망카드 > 고용보험수급자격증 또는 실업급여 수급 상세내역서 (고용보험홈페이지 본인 발급)

<중복수혜 제외 항목>

전산시스템	구분	중복해당	비해당	비고
차세대 행복e음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교육, 주거, 자활, 장제, 해산급여	※ 가구원 단위 수급
	서울형기초보장		해산, 장제급여	
	국가형긴급복지		교육, 의료, 주거, 전기요금, 복지시설이용, 연료, 해산, 장제급여	
생활복지 통합정보시스템	서울형긴급복지		교육, 의료, 주거, 연료, 전기요금, 해산, 장제급여	
차세대 행복e음	산재보험			※ 개인 단위 수급
	실업급여			

<비고에 대한 설명>

- ※ 가구원 단위 수급: 가구원 중 1명만 단독으로 수급을 받았을 경우는 중복에 해당하지 않음
- ※ 개인 단위 수급: 신청자 개인단위로 수급을 받아 가구원 중 수급 여부는 해당하지 않음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실업급여 중복수혜 여부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실업급여는 지급 첫 달에 한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한 날로부터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지급 첫 달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날짜와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기간과 겹치지 않아야 하며, 겹칠 경우 중복수혜에 해당합니다.

질문2. 중복수혜 여부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중복수혜는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날이 포함된 월에
①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② 실업급여
⑥ 산재보험급여만 해당하며, 이를 중복으로 지원받았는지 확인 후 지급 여부 결정합니다.
이 외에 예를 들어 자치구 자체지원 사업 등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은 책정 후 지급 시,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받은 해당 월과 중복수혜 여부 확인 필요)

질문3. 개인 민간보험을 지급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답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은 의료비가 아닌 소득상실로 인한 생계비를 보전하는 제도로 개인 실손보험 등 민간보험은 중복수혜에서 제외하고 있어 지급 받아도 괜찮습니다.

IV. 지급

1. 지급결정 및 지급

- 가. 대상자별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 나. 지급결정 통지
- 다. 지급기한
- 라. 지원금액

2. 이의신청

- 가. 신청사유
- 나.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IV 지급

1. 지급결정 및 지급

가. 대상자별 자격확인 및 지급결정

- 신청인의 신청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지침에 의한 지원 및 선정기준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확정대상자로 결정·통지

나. 지급결정 통지

- 통지방법: 유선, 우편, 문자 발송 등
- 통지내용: 결정내용(선정·미선정), 지급금액, 지급시기, 이의신청 안내 등
- 통지기한: 선정·미선정 확정 시 신청 결과 즉시 통지
 - ※ 지급 결정 시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지급 여부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급 시점에서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발생 월 중복지급 여부 최종적으로 추가 확인

다. 지급기한

- 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이내 지급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 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지급 가능

라. 지원금액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 ⇒ (2024년) 1일×91,480원, (2023년) 1일×89,250원
 - ※ 병가기간 연도에 해당하는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지급액 산정

※ 2024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16호): 시급 11,435원, 1일 91,480원

※ 20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90호): 시급 11,157원, 1일 89,250원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접수 이후 주소 이동 시 처리 방법

- 신청자가 서울시 “갑”구에서 신청 후 “을”구로 전출 시: 전출지에 공문 처리, 전입지구에서 지급처리
 - 통합조사팀: “갑”구 통합조사팀에서 “을”구로 신청자 이관(공문시행)
 - 보 건 소: “갑”구 보건소에서 “을”구로 원본 서류 이관(공문시행)
 - ※ 단, “갑”구 에서 소득·재산조사 완료 시 “갑”구에서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행복e음 지침」 V. Q&A > 4. 타구로 전출한 대상자 결정 및 지급 참고)
- 신청자가 소득재산 미완료 상태에서 서울시“갑”구에서 타 시도로 전출 시 : 행복 e음에서 소득·재산 조사 불가, 종결처리

자주하는 질문

질문1. 입원시기와 지급시기 연도가 다를 경우 지원기준은 어느 해 기준으로 지급해야 되나요?

(답변) 입원 기간이 해당하는 연도에 따라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이 2023년도의 경우 2023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입원이 2024년도의 경우에는 2024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질문2. 신청자가 A구에서 서울형 입원 활비를 지급받고,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 후 180일 이내 거주지가 변경되어 C구에서 중복으로 또다시 신청하였을 경우 타구 지원내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C구 보건소 접수 담당자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변경이력을 확인하고,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통계시스템에서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합니다. 서울시 자치구 간 변경이 확인된 경우 A구 보건소 담당자로 중복지급 여부를 공문의뢰하여 확인합니다.

2 이의신청

가. 신청사유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선정 결과 및 결정 내역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나. 이의신청 기한 및 방법

- 신청기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등기우편
- 구비서류: 이의신청서[서식 제7호], 이의신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 신분증

다. 이의신청 처리절차

- 신청인이 보건소(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사업 담당부서)에 이의신청서 제출
-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는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의신청 접수 시 보건소 자체 심의 방법

- 사업담당 과장 1인을 포함하여 총 3명으로 보건소 자체 심의회 구성

-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서식 제9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의뢰할 수 있음
- 서울시의 이의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
 - 서울시는 보건소가 의뢰한 이의신청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의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 심의·의결 후 그 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보건소에 통보하여야 함

V. 사후관리

1. 사후관리 개요

- 가. 목적
- 나. 중복수혜 조사

2. 환수

- 가. 환수
- 나. 환수대상
- 다.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 라. 환수절차

3. 환수관리

- 가. 환수금 체납
- 나. 독촉 및 체납처분
- 다. 정리보류

1. 사후관리 개요

가. 목적

- 신청 절차 및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등, ‘부정수급’ 확인을 통해 지급의 적정성 여부를 관리하여 국가·타 자치단체의 소득보장형(생계비) 지원사업과 중복수급의 문제로 인한 불필요한 재정지출 방지를 위함

나. 중복수혜 조사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이 의심될 경우 또는 시민으로부터 부정수급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고용노동부), 산재보험급여(근로복지공단) 등의 중복수혜 조회 실시

2. 환 수

가. 환 수

- 환수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변동사항 등 확인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에 따라 지원금액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 ① 수급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속임수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회보장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한 보장기관의 장은 그 사회보장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회보장급여를 받거나 받게 한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환수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의 장은 수급권이 없는 자에게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거나 그 변경·중지로 인하여 수급자에게 이미 제공한 사회보장급여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제공받은 사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이미 소비하였거나 그 밖에 수급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수 또는 반환받을 금액은 각각 부정수급자 또는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이를 환수하거나 반환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환수 및 반환명령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환수 대상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 ※ 부정수급에서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 기타 관계인(예를 들어, 신청자에게 허위로 고용임금 확인서를 발급해 준 고용주, 사용대차 확인서를 발급해 준 지인 등)도 부정수급자에 해당될 수 있음

다. 지원중단 및 지원금 환수

- 사후관리를 통해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확인 시, 해당하는 지원금액 전액 환수
 - 예시1) 증명서류 위조 및 허위 서류 발급 등
 - 예시2) 지원 대상자와 사업주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수급 혜택을 받은 경우 (지원액의 일체 또는 분취(分取) 하는 행위 등)

라. 환수 절차

- 보건소는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자로 환수 대상자가 확인될 경우 환수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 사유 및 환수내용(징수금액 및 납부기한)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환수 대상자에게 문서로 환수 통보
- 환수 대상자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를 지급한 보건소에 환급함

○ 환수 절차

업무절차	처리내용	업무주체
부정수급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수혜확인 • 부정수혜확인 예) 구비서류 위변조에 의한 지원금액 수령 등 	보건소
↓		
지원 금액 환수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부정수혜 확인시 환수 결정 (필요시 자문위원회 의결을 통한) 	보건소
↓		
환수 예정 통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수 결정 내역 통보 	보건소
↓		
고지, 독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고지 및 독촉 고지, 체납처분 	보건소

3. 환수관리

가. 환수금 체납

- 체납 대상자는 이후 지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고지
- 체납처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나. 독촉 및 체납처분

- 지원금 환수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독촉)」

- ① 납부의무자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에서 독촉 절차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한 「국세징수법」 등의 준용)」

지방행정제재·부과징수금에 대한 체납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압류금지 재산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32조, 제33조, 제3장제2절제2관을, 체납처분의 효력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6조, 제27조, 제3장제2절제3관, 제48조제2항 및 제3항을, 재산유형별 압류의 방법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40조, 제3장제2절제4관부터 제7관까지를, 교부청구와 참가압류의 절차 및 효력 등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2절제9관을, 압류재산의 매각 및 청산 절차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3장제3절부터 제5절까지를 준용하고, 정리보류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106조를 준용한다.

다. 정리보류(=결손처분)

- 미 환수 건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로 2022. 1. 28. 제목개정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시효완성정리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리보류를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4조(정리보류)」

제94조(정리보류) ①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리보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정리보류를 하려는 때에는 체납자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정기관에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의 유무를 확인(「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조회하여 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가 30만원 미만인 때에는 체납자의 행방이나 재산 유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다.

「채납정리 사무처리에 관한 훈령 제2조제4호」

4. "정리보류"란 체납자의 소재파악 곤란이나 무자력(無資力) 등으로 인하여 강제징수를 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그 집행이 무익한 행정력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강제징수 절차를 잠정적으로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 보장비용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관련법령의 시효로 인하여 소멸

↳ 관련법: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VI. 자문위원회 운영

1. 근거

2. 설치 및 운영

3. 주요기능

1. 근거

- 「지방자치법 제130조의1(자문기관의 설치 등)」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의 회의)」

2. 설치 및 운영

- 명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 설치: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임기: 위촉일로부터 2년
 - 위촉직: 2년(2회 연임 가능), 당연직: 재임기간
 -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함
- 인원: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구성: 시의원, 복지전문가, 보건전문가, 노동전문가, 홍보전문가, 시민, 관련단체, 공공기관, 당연직
- 운영방법
 - 회의개최: 필요할 경우 비상설 운영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제척·기피·회피: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주요기능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계획의 심의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 그 밖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VII. 서 식

- 【제1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 【제2호】 고용임금확인서**
- 【제3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 【제4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위임장**
- 【제5호】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 【제6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 통지서**
- 【제7호】 이의신청서**
- 【제8호】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 【제9호】 이의신청 검토 의견서**
- 【제10호】 급여비용·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제11호】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 【제12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 【제13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 【제14호】 가족관계 해체 사유서**

【서식 제1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

일용직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기타 개인사업자

신청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휴대폰)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휴대폰 문자 <input type="checkbox"/> 전자메일() <input type="checkbox"/> 수신거부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결정 및 관련 변동사항 발생 시 정보 제공			
	신청경로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홍보안내문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안내문·문자 <input type="checkbox"/> 리플릿·전단지·포스터 <input type="checkbox"/> 현수막·배너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 <input type="checkbox"/> TV·방송·라디오 <input type="checkbox"/> 소식지·반상회보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지하철·버스 <input type="checkbox"/> 지인, 기타() <input type="checkbox"/> 신문			
	근무지명(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소재지		세 부 직 업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관 계		전화번호(휴대폰)		
이 용 의 료 기 관	1	구 분	예)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등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병 명		이용기간	
	2	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병 명		이용기간	
	3	구 분		기 관 명	
		전화번호		주 소	
		상 병 명		이용기간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과거 신청내역 (1년 이내)	<input type="checkbox"/> 1차 신청 <input type="checkbox"/> 2차 신청 이상
중복수혜 확인 (해당 체크 √)	-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서울형긴급복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해당 없음

[가 구 원]

주민등록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 배우자 ② 직계혈족(부모, 자녀)
③ 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 ④ 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 배우자의 자녀

가구원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가구원 성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소득·재산 조 사	신청(조사) 시점에서 차세대 행복e음으로 공적조회되는 소득·재산을 우선 반영함을 인정합니다. ※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목적으로 가구원에 대한 동의 없이 조사 가능 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
급여 지급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 지급은 신청 후 “지급 시점”까지 서울시민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환수조치	신청서를 허위 작성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금을 받게 한 경우, 중복수혜 등 부정수급 한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를 즉시 환수하고 해당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자: _____ (서명 또는 인)

<p>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p>	<p>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p> <p>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직종, 국민건강보험가입형태, 근로 여부, 소득·재산·근로(사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대상자를 선정·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p> <p>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소득·재산 조사, 중복수혜확인, 대상자 관리, 만족도조사 및 효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및 취약계층 통계자료 추출 등 - 제공기간: 서울시, 보건복지부,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효과평가 평가기관</p> <p>4.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5년</p> <p>5.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정책수립 및 사업평가 등 설문·모니터링 동의</p>	<p>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과 관련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평가, 통계를 위한 설문 및 모니터링에 참여하고 동의합니다.</p>	<p>동의자: _____ (서명 또는 인)</p>
<p>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p>	<p>1. 이용사무(이용목적)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p> <p>2. 공동이용 행정정보명(6종):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입금계좌 확인정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건강검진결과통보서</p> <p>3.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 제출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하지 않음</p> <p>대상자: _____ (서명 또는 인)</p>

※ 유의사항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p>담당자 확인 사항</p>	<p>1. 의료기관 종별, 질병 분류, 직업 분류의 자료 수집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제도의 수요자군의 특성을 파악하여 향후 제도 평가, 모니터링, 홍보 활용 등을 목적으로 한다.</p> <p>2. 본 사항은 담당자가 참고자료(의료기관 종별, 질병 분류, 직업 분류기준)를 참고하여 작성한다.</p>	<p>담당자: _____ (서명 또는 인)</p>
-------------------------	---	-------------------------------------

직업 분류	<input type="checkbox"/> 1. 종교·사회복지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3. 문화·예술·방송·체육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5. 가사음식·여행·숙박·미용·오락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7. 운전·운송·유통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9. 건설·제조·기계·설비·생산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2. 교육·정보통신·공학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4. 돌봄·보건·의료·간병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6. 판매·영업·금융·보험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8. 청소·경비·기타서비스 관련직 <input type="checkbox"/> 10. 기타 직종
의료기관 종별분류	<input type="checkbox"/> 1.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input type="checkbox"/> 3. 종합병원	<input type="checkbox"/> 2. 병원급(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input type="checkbox"/> 4. 상급종합병원
질병 분류	<input type="checkbox"/> 1.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input type="checkbox"/> 3. 혈액, 조혈기관, 면역장애 <input type="checkbox"/> 5. 정신 및 행동장애 <input type="checkbox"/> 7. 눈 및 눈 부속기 질환 <input type="checkbox"/> 9. 순환계통 질환 <input type="checkbox"/> 11. 소화계통 질환 <input type="checkbox"/> 13. 근골격계 질환 <input type="checkbox"/> 15. 임신, 출산, 산후기 질환 <input type="checkbox"/> 17. 선천성 및 염색체 질환 <input type="checkbox"/> 19. 코로나19 관련 질환	<input type="checkbox"/> 2. 신생물 <input type="checkbox"/> 4. 내분비, 영양, 대사질환 <input type="checkbox"/> 6. 신경계통 질환 <input type="checkbox"/> 8. 귀 및 유도의 질환 <input type="checkbox"/> 10. 호흡계통 질환 <input type="checkbox"/> 12. 피부 관련 질환 <input type="checkbox"/> 14. 비뇨생식계통 질환 <input type="checkbox"/> 1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질환 <input type="checkbox"/> 18. 손상, 중독, 외인에 의한 질환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제1항 규정에 의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신청인과의 관계 :

(대리신청의 경우)

서울특별시 ○○○ 구 ○○○ 주민센터장 / ○○○ 보건소장 귀하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접수 ⇒ 자격요건 심사 ⇒ 지원 대상 여부 결정 ⇒ 급여 지급

필 수 제출서류	<p>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 소득·재산 정보제공 동의 포함)</p> <p>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 질병명 및 입원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서류 (예시) 입·퇴원 확인서, 입·퇴원 요약지, 진료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과 연계된 외래진료 확인 서류 (예시)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외래진료 의료기관의 질병명(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공단 건강검진확인서 또는 건강검진결과통보서 ※ 공단 건강검진결과통보서의 경우 검진 후 약 1개월 후 행정정보공동 이용에서 공무원이 확인 가능 <p>③ [근로자·사업자 확인 서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자 확인 서류 ※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 서류 제출 ▶ 고용임금확인서,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해당자 1부 ▶ (필수제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서식 제3호] - 사업소득자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담당자 조회 확인(제출 서류 없음) ▶ (필수제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1부 [서식 제3호] <p>④ [소득·재산조사]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확인 서류: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서식 제3호] - 재산확인 서류: 임대차 계약서가 없는 경우 ▶ 거주지·사업장 사용 확인서 1부 [서식 제 11호] - 사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1부 <p>⑤ 대리인 신청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자(신청인)신분증 사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위임장 [서식 제4호]
유의사항	<p>※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 지급 후라도 사후조사 결과, 부정수급 및 중복수혜가 발생하였을 경우 환수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p>
처리기한	<p>신청일로부터 30일(토·공휴일 제외) 이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소득·재산조사, 근로여부확인, 신청자의 자료 제출 지연 등)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처리합니다.</p>

【서식 제2호】

고 용 임 금 확 인 서

고용주 작성	피고 용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기 간							
	근로내역 (※ 입원·진료·검진 전월 포함 90일간 이력 기재)		구 분	년 월	년 월	년 월		
		월 근로일수						
		90일 간 총 근로일수						
신청인 작성	소득내역		월 원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					

【 고용주 】

【 신청인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월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주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주민센터장 귀하

유 의 사 항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작성예시】

고 용 임 금 확 인 서

고용주 작성	피고 용자	성 명	김 서 울	생년월일	2000.00.00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고 용 기 간	2024. 1. 5.~2024. 4월 현재				
	근로내역 (※ 입원·진료·검진 전월 포함 90일간 이력 기재)	구 분	2023년 1월	2023년 2월	2023년 3월	
월 근로일수		10일	15일	10일		
90일 간 총 근로일수		35일				

신청인 작성	소득내역	월 120만 원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
-----------	------	--------------------------------

【 고용주 】

【 신청인 】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의 월 소득금액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사업장명 :

사업장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전화번호 :

사업주명 :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주민센터장 귀하

유의사항

※ 근로상태 및 소득을 허위로 신고,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서식 제4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위임장

신청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소		
내용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변경, 이의신청의 위임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관계
	주소		

위임자(본인)는 대리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과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주민센터장 귀하

업무담당자 확인사항	위임자(신청자 본인)의 신분증(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타인명의통장 입금동의서

<p>신 청 인</p>	<p>「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본인()의 통장이 압류되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신청함</p> <p>년 월 일</p> <p>신청인 성 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p>
<p>통장명의자</p>	<p>1. 본인 통장으로 ()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 입금</p> <p>2.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목적 및 제공범위 : ()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 지급관련 인적사항 및 계좌번호 제공 및 활용</p> <p>위 사항에 대해 동의합니다.</p> <p>년 월 일</p> <p>통장명의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p>
<p>첨 부</p>	<p>계좌번호 사본 1부.</p>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형법 제228조(공정증서 원본 등의 부실기재)」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번호
	주 소	

이의 신청일	
처 분 내 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변경 [] 기각 [] 각하
이의신청 결정 사유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이의신청)」에 의거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담 당 자 : (소속) (성명)

문의전화 :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직인

참 고 사 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하지 않는 상태
-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서식 제9호】

이의신청 검토 의견서

수 신: 서울특별시

참 조: 건강증진과장

접수번호 제 호

신청인: 성 명(주민등록번호)
주 소

피 신청인: ○○ 구 보건소장

이의신청 개요

1. 처분내용:

2. 신청인 주장

3. 피 신청인 검토의견

불임서류: 이의신청서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직인

【서식 제10호】

급여비용 · 부당이득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받은자 (납부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환수 결정금액	원			
환수사유				

귀하에게 지급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급여에 대한 환수 결정내역을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담당자 :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직인

※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전화 ☎ 000- 0000)

【서식 제11호】

거주지 · 사업장 사용 확인서

사용인 (임차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통 반)			
	임대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임차인의 부양의무자에 해당 (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외 2촌 이내의 혈족 (관계 :) <input type="checkbox"/> 임대인이 제3자 ※ 부양의무자란 임차인과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의미(부모, 자녀, 사위, 며느리, 계부모)			
	임대인과의 함께 거주 여부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함 <input type="checkbox"/> 임대인과 동일 주택 등에 거주하지 않음			
사용내용	사용유형	<input type="checkbox"/> (무상 사용) 위 사용인이 상기와 같이 사용대차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임대차 관계) 위 사용인이 상기와 같이 실거주하고 있음 <input type="checkbox"/> (전대차 관계) 위 사용인이 본인이 임차한 주택 등을 사용하고 있음			
	사용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사용현황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가 방, 주방, 욕실 등 주택 전체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신청자가 방, 주방, 욕실 중 일부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사용대가	<input type="checkbox"/> 생활비 일부 보조 <input type="checkbox"/> 육아·가사노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 (예시: 월 _____ 원, 보증금 _____ 원)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거주지 및 사업장 등을 위와 같이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임대인(전대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전 화 번 호 :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주민센터장 귀하

【서식 제12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15세 미만인 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사용자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
학교	학교명	
	소재지 (전화번호 :)	
친권자 또는 후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15세 미만인 자와의 관계	
<p>「근로기준법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취직 인허, 신청 등)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15세 미만인 자의 사용을 인허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p>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3호】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 표준근로계약서

_____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_____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 개시일'만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__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_____원
 - 상여금 : 있음 () _____원, 없음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없음 ()
 . _____원, _____원
 . _____원, _____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_____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출 여부: _____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 구비 여부 : _____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제67조(근로계약)」 이행)
10. 기타
 -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취직인허증을 교부받아야 하며,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_____ (전화 : _____)
 주 소: _____
 대 표 자: _____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_____
 연 락 처: _____
 성 명: _____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구 보건소장 / 주민센터장 귀하

VIII. 참고자료

1. 2024년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2. 담당자 확인 사항 분류 기준

3. 보건소 담당부서 및 유관기관 연락처

4.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5. 사업지침 변경 이력

2024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인 자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모두 “예”에 해당할 경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가능 대상자가 됩니다.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여부 결정’

구 분	내 용	체	크																
서울시 거주	①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격	②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입원, 공단일반 건강검진	입원 ③-1.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이 아닌 질병으로 조산원, 요양병원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하였다.(단, 정신병원 입원은 가능)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공단일반 건강검진 ③-2.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공단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제외)을 실시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사업 소득자자격 (해당자)	근로 소득자 ④-1.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업 소득자 ④-2. 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소득·재산 기준 (2개 항목 모두충족)	소득 ⑤-1.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소득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div style="text-align: center; color: #0000ff;"> < 2024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 (단위: 원/월) </div>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5px 0;">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10%;">1인 가구</th> <th style="width: 10%;">2인 가구</th> <th style="width: 10%;">3인 가구</th> <th style="width: 10%;">4인 가구</th> <th style="width: 10%;">5인 가구</th> <th style="width: 10%;">6인 가구</th> <th style="width: 10%;">7인 가구</th> </tr> </thead> <tbody> <tr> <td>기준</td> <td>2,228,445</td> <td>3,682,609</td> <td>4,714,657</td> <td>5,729,913</td> <td>6,695,735</td> <td>7,618,369</td> <td>8,514,994</td> </tr> </tbody> </table>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 (8인 가구: 9,411,619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재산 ⑤-2. 신청자 및 가구원 모두의 재산합이 3억 5천만원 이하[공시지가] (토지, 건축물, 주택, 임차보증금 등 일반재산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복수혜	⑥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민기초생활수급(생계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⑦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기초보장(생계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국가형긴급복지(생계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서울형긴급복지(생계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실업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⑪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이 속한 월에 산재보험급여 지급을 받은 적이 없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신청기간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였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검진을 말함(암 검진 제외)

담당자 확인 사항 분류 기준

【1. 직업 분류】

연번	직업 분류	주요 예시
1	종교·사회복지 관련직	목사, 신부, 승려, 그 외 성직자, 사회복지사, 상담사
2	교육·정보통신·공학 관련직	웹 프로그래머, 네트워크 시스템 개발자, 정보 보안 전문가, 통신장비 기사, 데이터 설계 및 프로그래머, 예능강사, 학습지 및 교육 교구 방문 강사
3	문화·예술·방송·체육 관련직	연극·영화 및 영상 관련 종사원, 유튜버,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작가, 통번역가, 디자이너, 레크리에이션종사자
4	돌봄·보건·의료·간병 관련직	요양보호사, 간병인, 이용사, 영양사, 재활사
5	가사·음식·여행·숙박·미용·오락 관련직	가사 및 육아 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 보조원, 조리사, 주유원, 전단지 배포원, 미용사, 피부 및 체형 관리사
6	판매·영업·금융·보험 관련직	소규모 상점 경영자, 상점 판매원, 매장 계산원 및 요금 정산원, 단말기 및 통신 서비스 판매원, 온라인 쇼핑 판매원, 텔레마케터, 방문 판매원, 노점 및 이동 판매원,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자동차 영업원, 계산원
7	운전·운송·유통 관련직	화물차 및 특수차 운전원, 대리 운전원 및 주차원,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기타 배달원
8	청소·경비·기타서비스 관련직	청소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수거원, 경비원, 가스 점검원, 주차 관리원 및 안내원,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9	건설·제조·기계·설비·생산 관련직	건설 단순 종사원, 제조 단순 종사자, 기계설비 조직원, 용접원, 정비원, 조립원, 재단사, 재봉사, 제화원
10	기타	1~9에 속하지 않는 직업

※ 분류기준: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다빈도 직업 범주화

【2. 의료기관 종별 분류】

연번	구 분	예 시
1	의원급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2	병원급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3	종합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https://www.hira.or.kr/main.do
4	상급종합병원	>정보공개>공공데이터개방>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공공데이터목록> 요양기관현황정보

제외: 요양병원, 조산원

※ 근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3조의2(병원등),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3. 질병분류】

연번	KOICD 대분류	주요 예시
01	특정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	A형간염(급성), B형간염, 위장염 및 결장염, 바이러스성 장염, 말라리아, 비브리오패혈증, 대상포진, 결핵(상세불명의 결핵성 흉막염 등)
02	신생물	암(갑상선암, 유방암, 폐암, 전립선암, 폐암, 위암, 췌장암, 직장암 등), 신생물(갑상샘, 직장, 결장, 기관지, 난소, 유방, 신장, 췌장, 전립선등), 용종, 종양, 근종, 골수종, 림프종(세포림프종, 악성림프종), 선종, 선근증 등
03	혈액 및 조혈기관의 질환과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특정 장애	뇌하수체 양성 신생물, 난소종양,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외
04	내분비, 영양 및 대사 질환	당뇨병, 갑상선 질환, 영양실조, 비만 및 기타 과다영양, 대사장애
05	정신 및 행동장애	우울증, 알츠하이머 치매, 정신분열, 기분장애, 신경증, 인격 및 행동장애, 정신발달장애 등
06	신경계통의 질환	뇌출혈, 뇌경색증, 뇌성마비, 파킨슨병, 두통, 편마비, 손목터널증후군,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등
07	눈 및 눈 부속기의 질환	백내장, 고안압, 망막염, 결막염, 유리체출혈
08	귀 및 유도의 질환	만성 중이염, 어지럼증, 중이염, 화농성중이염
09	순환계통의 질환	고혈압, 협심증, 뇌경색증, 뇌출혈, 류마티스, 심장병, 경동맥폐쇄, 폐혈전색전증, 대동맥판막협착증, 뇌질환, 심혈관질환, 동맥협착, 뇌동맥수술, 교뇌두개내출혈, 전정신경염, 급성 대뇌 경색증, 뇌실내, 뇌내출혈모야모야병, 림프관 및 림프질환
10	호흡계통의 질환	급성 상기도감염, 인플루엔자 및 폐렴, 폐질환, 편도주위농양, 진균성 부비동염
11	소화계통의 질환	담낭염(급성, 만성), 담관결석, 간염, 간경변, 위염, 위정맥류, 크론병, 소화기질환, 복막염, 췌장염, 충수염, 토혈, 게실염, 대장질환, 향문루, 치루
12	피부 및 피하조직의 질환	화상, 습진, 홍반, 기타농가진, 다리의 궤양, 봉와직염, 티눈
13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	골절, 추간판 관련(추간판 전위, 추간판 돌출, 추간판 장애, 추간판 탈출 등), 관절염(퇴행성), 고관절증, 슬관절, 무릎관절, 신경통, 십자인대, 인대파열, 연골(파열), 요추, 척추(척추협착증 등), 경추, 건막염, 괴사증(골괴사), 오십견, 탈구, 통풍
14	비뇨생식계통의 질환	요실금, 요관결석, 신장염, 방광염, 신우염(급성), 급성신부전, 과다 및 빈발월경, 자궁내막폴립, 유방의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명시된 장애
15	임신, 출산 및 산후기	자궁외 임신, 자궁 평활근종 등
16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
17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
18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특정 기타 결과	골절(늑골, 쇄골, 쇄기뼈, 근위부, 하악골, 손가락, 발가락, 대퇴골 등 각종 골절), 손상(탈구손상, 척수손상, 근육 및 힘줄 손상, 신경손상, 압계손상 등 각종 손상), 열상(각종 근육 및 연골 찢김, 열상), 염좌(무릎, 요추, 고관절, 팔꿈치, 경추부 등), 출혈, 타박상, 탈구, 파열(아킬레스건, 인대, 연골, 회전근개 등 각종 파열), 화상, 뇌진탕, 뇌출혈 등
19	코로나19 관련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통계시스템 추가 항목 코로나19 관련 질병 건으로 해당 입력
20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온라인통계시스템 추가 항목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 및 검진 건 해당 입력

※ 기준: KOICD 대분류에 2019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관리대장 기준 주요 질환 분류
KOICD 질병분류정보센터에서 질병명 확인 가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보건소 담당 현황

연번	기관명	부서명	주 소	연락처	팩스
1	종로구보건소	의약과	종로구 자하문로19길 36 (옥인동, 종로구보건소)	2148-3685	2148-5840
2	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중구 다산로 39길 16 (무학동, 중구보건소)	3396-6423	3396-8915
3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이태원동, 용산구보건소)	2199-8103	2199-5820
4	성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성동구 마장로 23길 10 (홍익동, 성동구보건소)	2286-7055	2286-7062
5	광진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광진구 자양로 117 (자양동, 광진구보건소)	450-1968	411-1771
6	동대문구보건소	지역보건과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용두동, 동대문구보건소)	2127-5193	3299-2642
7	종량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종량구 봉화산로 179 (신내동, 종량구보건소)	2094-0743	490-4510
8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성북구 화랑로 63 (하월곡동, 성북구보건소)	2241-6003	2241-6607
9	강북구보건소	지역보건과	강북구 한천로 897 (번동, 강북구보건소)	901-7774	901-5574
10	도봉구보건소	의약과	도봉구 방학로 3길 117 (쌍문동, 도봉구보건소)	2091-4523	2091-6363
11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노원구 노해로 455 (상계동, 노원구보건소)	2116-4366	2116-4647
12	은평구보건소	질병관리과	은평구 은평로 195 (녹번동, 은평구보건소)	351-8801	351-5683
13	서대문구보건소	의약과	서대문구 연희로 242 (연희동, 서대문구보건소)	330-8852	330-1854
14	마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마포구 월드컵로 212 (성산동, 마포구보건소)	3153-9044	3153-9039
15	양천구보건소	의약과	양천구 목동서로 339 (신정동, 양천구보건소)	2620-3935	6948-5571
16	강서구보건소	의약과	강서구 공향대로 561 (염창동, 강서구보건소)	2600-5905	2620-0507
17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구로동, 구로구보건소)	860-3157	860-8134
18	금천구보건소	의약과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시흥동, 금천구보건소)	2627-2689	2251-1815
19	영등포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영등포구 당산로 123 (당산동, 영등포보건소)	2670-4821	2670-4876
20	동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동작구 장승배기로 10길 42 (상도동, 동작구보건소)	820-9567	820-9440
21	관악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관악구 관악로 145 (봉천동, 관악구보건소)	879-7066	879-7851
22	서초구보건소	건강정책과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동, 서초구청 별관2층)	2155-8133	2155-8189
23	강남구보건소	질병관리과	강남구 선릉로 668 (삼성동, 강남구보건소)	3423-7125	3423-8907
24	송파구보건소	보건지소	송파구 양산로 5 (거여동, 송파구보건지소)	2147-4898	2147-3929
25	강동구보건소	보건의료과	강동구 성내로 45 (성내동, 강동구보건소)	3425-6840	3425-7267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유관기관 연락처

연번	기관명	관련업무	연락처	
1	서울시	업무총괄	02-2133-5431, 5432, 5433	
2	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행복e음)	02-1566-3232	
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발급	대표번호 ☎1577-1000 → "1"번 → "1"번 대표번호 ☎1588-0075 → "0"번 → "1"번	
4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서울지역본부	02-2230-9411
			서울강남지사	02-3459-7274
			서울서초지사	02-6250-7228
			서울동부지사	02-3433-1402
			서울성동지사	02-460-3571
			서울서부지사	02-2077-0301
			서울남부지사	02-2165-3261
			서울북부지사	02-944-8141
			서울관악지사	02-2109-2270
5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실업급여	서울고용센터	02-2004-7301
			서울서초고용센터	02-580-4900
			서울강남고용센터	02-3468-4794
			서울동부고용센터	02-2142-8924
			서울서부고용센터	02-2077-6000
			서울남부고용센터	02-2639-2300
			서울강서고용센터	02-2069-6700
			서울북부고용센터	02-2171-1700
			서울관악고용센터	02-3282-9200
			6	서울노동권익센터
7	(사)한국노동복지센터	02-2274-5055		
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02-312-7488		
9	서울노동자쉼터	노동자	휴서울미디어노동자쉼터	1833-8261
			휴서울이동노동자합정쉼터	070-7005-5595
			휴서울이동노동자북창쉼터	02-722-7214
			휴서울이동노동자서초쉼터	070-5101-5431
10	비정규노동자의집 꿀잠	노동자	02-856-0611	
11	노동자복지센터		양천구 노동복지센터	02-2645-0034,35
			강서구 노동복지센터	070-4226-8858
			서대문구 근로자복지센터	02-395-0720/0025
			광진구 노동복지센터	02-458-5055
			관악구 노동복지센터	02-886-7900
			노원구 노동복지센터	02-3392-4905
			구로구 근로자복지센터	02-852-7339/40
			성동구 근로자복지센터	02-497-8573
			성북구 노동권익센터	02-909-3988
12	서울시지역영업지원센터	영업자	1577-6119	
13	서울시 어르신 돌봄중사자 종합지원센터	노동자	02-389-7790	
14	서울시 여성발전센터	노동자	남부여성발전센터	02-802-0922
			북부여성발전센터	02-972-5506
			동부여성발전센터	02-460-2300
			서부여성발전센터	02-2607-8791
			중부여성발전센터	02-719-6307~8
15	근로자건강센터	직업건강	서울근로자건강센터	02-6947-5700~3
			서부근로자건강센터	02-2093-2650
			서울중구분소	02-2268-6497
			서울성동분소	02-6077-7500

서울특별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10. 4.] [서울특별시조례 제8899호, 2023. 10. 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노동정책담당과), 02-2133-543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0.4>

1.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이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정신적·육체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외래 치료하거나 검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상실이 생계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초래할 때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의료기관"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3. "입원"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입원을 말한다.
4. "외래진료"라 함은 3호에 따른 입원과 연계되는 입원 전·후 통원치료를 말한다.
5. "검진"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시민이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 또는 검진 등을 위하여 근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의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및 재산 등이 적정한지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③ 시장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각 호에서 제시된 제도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4>

제4조(지원대상자와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등) ①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대상자 및 소득보전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0.4>

1.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서울시민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2. 소득보전 기준액은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 8시간을 1일 기준으로 한다.

②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기간은 1인 연간 총 13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지원사유별 최대일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단, 검진의 경우는 1일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의료기관 입원 치료 일수 13일

2. 1호의 입원치료와 연계된 외래진료 3일

③ 삭제 <2023.10.4>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① 제4조에 따른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건소 중 어느 하나의 기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2023.10.4>

②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제출된 지원 신청서 검토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활용하여 자격요건 등을 심사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신청인은 제2항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해 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행정

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주소이력포함)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검진결과통보서
3.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4. 사업자등록증명, 사업자 휴업·폐업 사실증명
5. 입금계좌 확인정보

제6조(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제5조의 지원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9.30>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보건소장은 선정·지원기준 등을 확인·검토하여 이의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③ 보건소장은 수용여부를 직접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신설 2021.9.30>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의신청의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1.9.30>

제7조(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입원 생활비 지원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0.4>

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심의
2.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지침 개발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보건소장이 의뢰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이의신청 및 검토의견서 자문
4. 그 밖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 조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3.10.4]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2.12.30>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사회복지·보건의료·노동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노동·공정·상생정책관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한다.<개정 2023.7.24>

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7.24>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9.3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7.24>]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7.24>]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삭제 <2023.7.24>

- ② 삭제 <2023.7.24>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4>]

제12조(회의록) ① 시장은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해당 위원들에게 열람 및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서울특별시의회의 요구가 있거나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등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1.9.30]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4>]

제13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7.24>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7.24>]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30]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4>]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7.24>]

부칙 <제8899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9-2020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주요변동 사항

구 분	2019년 (사업시행일 6.1.)	2020년
서울거주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입원(검진)개시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신청자격 (사망자)	가구원 대리신청 가능	신청 불가
건강보험 지역가입	입원(검진) 전월기준 3개월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유지	입원(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 유지
근로조건	입원(검진)전월기준 10일이상 근로(사업)를 3개월 유지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
사업조건	입원(검진)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입원(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
가구원범위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 하는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 ④형제자매 배우자의 ①직계혈족(시 부모, 장인, 장모) ②형제자매(시동생, 처형 등) -주민등록상 다른 주소지 거주 ①배우자 ②만25세 미만 미혼자녀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 하는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배우자의 자녀
소득·재산 조사방법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100% 산정 - 본인 소유주택을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시 모두 재산으로 산정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산정 - 본인 소유주택을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시 본인 소유 1체에 한하여 임대금 공제
지원금	1일 81,180원 (’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4,180원 (’20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2019.06.01.~12.31. 실시한 입원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에 대한 신청자 처리

- 2019.12.31.까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시: 2019년 지침 적용
- 2020. 1. 1.이후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신청서 제출 시: 2020년 지침 적용
(단 지급액은 20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81,180원 적용)

『2020년 1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0.2.1.)

구 분	보완 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조사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 직업 분류, 세부 직업, 질병 분류, 의료기관 종별 조사 항목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자 관리대장』 - ‘Ⅵ. 참고자료’에 담당자 확인 사항 분류 기준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요자군의 특성을 파악 가능한 조사 항목 추가
소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사 시 본인 제출 가능한 공적서류 예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조사 시 행복e음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적용하되 신청자가 최근 소득을 반영을 원할 경우 ‘소득금액증명’ 제출 시 수정 가능

『2020년 2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0.4.1.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① 소득재산 조 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조사 시 행복e음 공적 조회에서 소득이 “0”으로 나올 경우,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의 소득금액을 반영 (입원 전 3개월 소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재산 조사 시 행복e음 공적 조회에서 소득이 “0”으로 나올 경우,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 신고서』의 신고시점의 월 소득으로 변경 기재, 현재 소득 반영 <p>【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장가입자가 퇴사 후 입원·신청할 경우 신청시점에서는 근로를 하고 있지 않아 소득이 “0”로 나오며 이럴 경우 입원 전 소득을 적용, 사업취지에 맞지 않고 접수·조사 현장에서 혼란 발생, 소득재산조사는 신청시점으로 통일
② 제출서류 서식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 입원(검진)전 3개월 전의 근로와 소득 기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현재 월소득으로 변경 기재 - 근로: 입원(검진) 전 3개월 근로내역 기재(변동없음) - 소득: 신청 시점의 현재 월 소득 기재 <p>【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점의 소득 재산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청서 서식 변경
③ 실업급여 산재보험 중복확인 주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월1회 요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공단,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에 연1회 요청 * 산재보험 및 실업급여 행복e음의 소득조사 시 1차 확인 <p>【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노동부로부터 월1회 중복조회 협조 불가 통보 (’20. 3. 9.) - ’19년도와 달리 ’20년도는 입원(검진) 전월 3개월의 지역가입자격이 완화되어 과거 3개월 직장가입자였던 시민이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을 할 수 있음 - 유급병가 수급 이후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을 수령할 수 있어 매년1~12월 신청자를 이듬해 1월 연1회 수급여부 조회로 중복수혜 검증

『2020년 3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0.7.1.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원 범 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거주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배우자의 부모가 가구원에서 누락,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 거주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의 직계혈족(사부모, 장인, 장모)
근 로 인정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에게 보수를 받는 가족돌봄은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에서 인정하는 요양보호사의 가족돌봄 인정</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는 가족돌봄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
서 울 거주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검진)일 기준 1개월(30일)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입원(검진)일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공단 일반건강검진]개시일 기준 1개월(30일)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서울시민
재산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자동차 미포함) ①토지, 건축물, 주택 ②항공기, 선박 ③주택 상가등의 임차보증금(전세금포함) ④100만원 이상의 가축, 종묘 등 동산 ⑤입목재산, 어업권, 회원권,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주택 매매 등 현금화 된 재산에 대한 기준 명시</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만 적용(금융,자동차 미포함) ①~⑤ 좌동 - (추가)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포함)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 및 처분(매매, 금융재산 감소 등)하여 현금을 소유한 경우 재산 미 포함
입 원 인정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확인한 질환 전체 - 지급제외: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의 입원 및 조산원 및 요양병원 입원 제외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5px; margin-bottom: 10px;"> <p style="text-align: center;">질환이 아닌 장기기증을 위한 입원의 경우 명시 필요</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로 확인한 질환 전체 - 지급제외: 좌동 - (추가) 장기기증 공여로 인한 입원 지원 가능

<p>개 인 정보수집 활용동의</p>	<p>○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 - 내용: 개인정보활용 목적, 범위, 제3자 정보제공 동의, 개인정보보유 및 파기</p>	<p>개인정보 제공 거부 시 제한 사항 추가 필요</p> <p>○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 - 내용: 좌동 - (추가) 상기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제공 거부 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p>
<p>중복수혜</p>	<p>○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신청자 자녀의 교육급여를 제외한 모든 항목 중복지급 불가</p> <p>○ 자동차보험 중복지급 불가</p>	<p>지원 목적과 취지가 상이한 중복수혜 불가 항목 조정</p> <p>○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생계급여만 중복 지급 불가</p> <p>○ 자동차보험 중복지급 허용 *입·퇴원 영수증 불필요</p>
<p>산재보험 실업급여 지급여부 확인방법</p>	<p>○ 근로복지공단(산재보험), 고용 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실업급여) 연 1회 중복수혜 의뢰</p>	<p>산재보험·실업급여 중복수혜 확인의 행정 효율성 제고</p> <p>○ 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 조사 시 실업급여 및 산재보험 소득 항목을 조회하여 검색되면 입원 및 검진 시 급여 수급 내역 확인</p>
<p>제출서류 서식변경</p>	<p>○『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현재 월소득 기재</p>	<p>월별 소득신고가 불규칙한 일용근로자 소득 기재법 명시 필요</p> <p>○『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고용임금확인서』 현재 월소득 기재 - (추가) 일용근로자는 1년 연평균 소득 기재</p>

『2020년 4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0.9.1. 적용)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가구원 범 위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배우자의 부모가 가구원에서 누락, 형평성 확보를 위해 배우자의 직계혈족 포함</p> <p>○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지 거주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재혼가정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p> <p>○ 주민등록표상 동일주소지 거주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의 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배우자의 자녀</p>
소득재산 조 사	<p>○ 소득·재산조사는 신청시점으로 통일</p>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소득·재산 기준 행복e음 조사시점 적용</p> <p>○ 소득·재산조사는 행복e음 조사시점 으로 통일</p>
근로조건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직장 근로상황에 따른 근로일수 적용 방법</p> <p>○ 신청자의 직장 근로상황에 따른 일 시적 방학, 휴업 등으로 일을 쉬고 있는 경우(예: 문화원, 학교 등) 재직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근로 확인 처리</p>
재산조사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배우자 사망 시 재산 산정</p> <p>○ 배우자 사망 시 가구원 재산산정 기준은 민법에 따라 적용,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액에서 배우자 1.5, 자녀 각 1로 적용하여 산정</p>
지급기준		<p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신청 후 지급 시 까지 거주 조건</p> <p>○ 신청 후 지급 시점까지 ‘서울시민으로 거주’ 하여야 함(* 신청서에 표기 함)</p>

『2021년 1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1. 4. 30.)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확대지원 적용 기준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확대 시행일('21.1.1.) 부터 실시한 입원(퇴원일 기준) 및 입원 전후 외래 건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는 퇴원일이 '21.1.1. 이후 건에 대해서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확대 시행일('21.1.1.)부터 실시한 입원(퇴원일 기준)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적용 기준 - [입원] 퇴원일 기준 '21.1.1. 이후부터 적용 - [입원연계 외래진료]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기준 '21.1.1. 이후부터 적용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무급휴가 여부 기재-서식1), 진료비 영수증 ① 1차 입원만 신청 시: 기존 입원신청 서류와 동일 ② 1차 입원 신청 +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 서류 + 진료비 영수증 ③ 1차 입원 신청 후 2차로 입원 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신청서+진료비 영수증 	<div style="border: 1px dashed black; padding: 2px; margin-bottom: 10px;"> 동일 질병명 확인 서류 제출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무급휴가 여부 기재-서식1), 동일 질병명 확인 서류 제출 (단, 영수증, 상세내역서, 처방전,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서류 중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이 선택) ① 1차 입원만 신청 시: 기존 입원 신청 서류와 동일 ② 1차 입원 신청 + 입원연계 외래 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질병명 확인 서류 ③ 1차 입원 신청 후 2차로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신청서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질병명 확인 서류

『2021년 2차 지침변경』 주요내역('21. 8. 2.)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2-2 소득· 재산 조사 재산 (P.31)	② 본인 소유의 주택 1채를 임대(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주택에 임차(전세) 거주 시 · 소유주택(시가표준액)-소유주택 임대보증 금(환산액)+주거용 임차보증금(환산액) ※ 본인 소유주택이 2주택 이상일 경우, 2개 중 고가인 시가표준액 1개 주택에 한하 여만 인정하고 1개 주택 이외의 주택은 보유 주택 시가표준액을 합산하고 그에 따른 임대보증금은 고려하지 않음. ※ 시가표준액 보다 전세금이 클 경우 “0” 처리, 소유주택과 전세보증금 모두 합산	<수정> 재산액 산정 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 ② 본인소유 주택 1채를 임대(전세) 주고 본 인은 다른 주택에 임차(전세) 거주 시 본 인소유 주택의 공시지가 적용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가족, 친척, 지인의 집에서 무상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 소유주택의 공시지가 적용 ※ 2주택 이상 보유한 경우, 각 주택에 대한 공시지가 합산하여 재산액 산정 - 표(사례 1,2,3) 삭제										
2-3 입원 및 공단 일반건 강검진 가. 입원 (P.32)	<신설> ○ 두 개 연도에 걸친 입원의 경우, 지원 적용 기간 제한 • 입원~퇴원 1회에 대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1회 가능 • 입원기간이 지원가능일수 13일을 초과하는 두 개 연도에 걸친 입원 의 경우, 해당 연도별 지원일수와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입원일 부터 지원일수 적용(여기서 입원기간은 총 입원기간이 아니라 중복수혜 기간을 제외한 실질적 지원대상이 되는 입원기간을 의미 함) - 21년 최대 지원일수 13일 중 지원 받지 못한 나머지 일수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또는 21년 근로·사업 활동 후 추가 입원 시 지원신청 가능 <예 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style="width: 50%;">입원 기간</th> <th style="width: 50%;">지원 적용</th> </tr> </thead> <tbody> <tr> <td>20.12.20.~21.1.5.(17일) ⇒20년 12일, 21년 5일</td> <td>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td> </tr> <tr> <td>20.12.26.~21.1.5.(11일) ⇒20년 6일, 21년 5일</td> <td>20년: 6일×84,180원 21년: 5일×85,610원</td> </tr> <tr> <td>20.12.29.~21.1.15.(18일) ⇒20년 3일, 21년 15일</td> <td>20년: 3일×84,180원 21년:10일×85,610원</td> </tr> <tr> <td>20.11.20.~21.3.30(131일)</td> <td>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td> </tr> </tbody> </table>	입원 기간	지원 적용	20.12.20.~21.1.5.(17일) ⇒20년 12일, 21년 5일	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	20.12.26.~21.1.5.(11일) ⇒20년 6일, 21년 5일	20년: 6일×84,180원 21년: 5일×85,610원	20.12.29.~21.1.15.(18일) ⇒20년 3일, 21년 15일	20년: 3일×84,180원 21년:10일×85,610원	20.11.20.~21.3.30(131일)	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
입원 기간	지원 적용											
20.12.20.~21.1.5.(17일) ⇒20년 12일, 21년 5일	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											
20.12.26.~21.1.5.(11일) ⇒20년 6일, 21년 5일	20년: 6일×84,180원 21년: 5일×85,610원											
20.12.29.~21.1.15.(18일) ⇒20년 3일, 21년 15일	20년: 3일×84,180원 21년:10일×85,610원											
20.11.20.~21.3.30(131일)	20년:10일×84,180원 21년: 3일×85,610원											

『2021년 3 지침변경』 주요내역('21. 9. 30.)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외래치료(검진) 지원 -

구 분	2021년	2021년 신설 확대	비 고
확대지원	<p style="text-align: center;">연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p> <p>※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3개월) ① 입원과 동일진료과목 ② 입원 의료 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인정</p> <p>※ 확대지원 시행일: 2021.1.1.</p>	<p style="text-align: center;">1인 1회만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1일]</p> <p>※ 확대지원 시행일: 2021.9.30. (2021.9.30.이후 코로나19 예방접종자부터 적용) [※ 한시적 시행: 2021.9.30.~2022.12.31)]</p>	<p>※ 2021년 기존 사업에 신설 확대 내용 추가</p>
확대지원 적용 기준일	<p>확대지원 시행일('21.1.1)부터 실시한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적용 -(입원) 퇴원일 기준 '21.1.1. 이후 -(입원연계 외래진료) 외래진료일 기준 '21.1.1. 이후</p>	<p>확대지원 시행일('21.9.30) 부터 실시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4주(28일) 이내 외래치료 또는 검진 시 적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 기준 적용)</p>	<p>※ 코로나19 예방접종 +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 및 검진 동시 충족</p>
서울거주	<p>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p>	<p>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개시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민</p>	
건강보험 지역가입	<p>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 검진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p>	<p>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p>	
근로조건	<p>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p>	<p>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p>	
사업조건	<p>입원, 공단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3개월 동안 45일 이상 유지</p>	<p>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유지</p>	

소득· 재산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재산의 주거용 재산 조사 시 전월세 임차보증금 80% 산정 - ㉡본인 소유 주택 임대주고 본인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여 거주 시 본인 소유 1채 한해 임대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좌동 - ㉣ 재산액 산정 시 소유주택 공시지가 적용(*2차개정 참고) 	
가구원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자의 ①배우자 ②직계혈족(부모, 자녀) ③직계혈족(자녀)배우자(며느리, 사위) ④배우자직계혈족(시부모, 장인, 장모) ⑤배우자의 자녀 	좌동	
신청자격	사망자 신청 불가		
신청기한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및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지원금	1일 85,610원 (’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좌동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확대 주요 내용
-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최대3일) 포함 확대(13일) 지원 -

입원연계 외래진료 확대 적용 기준

- 입원연계 외래진료일 기준 '21.1.1. 이후부터 적용
- 입원 전 외래진료: 입원일 기준 90일 이내, 입원 후 외래진료: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

구분	내 용	인정여부
예시	㉠ (입원 전 외래) '20.11.25. (1일)	⇒ 지원 불가
	㉡ (입원) '20.12.1.~'20.12.20. (20일)	⇒ 10일 지원 가능
	㉢ (입원 후 외래) '20.12.31.(1일)	⇒ 지원 불가
	㉣ (입원 후 외래) '21.1.1.(1일)	⇒ 1일 지원 가능
		☞ 인정일수: 11일(입원 10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1일)

- * 입원신청 지급 후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 신청 시 적용
- * 입원연계 외래진료만 신청: [근로·사업, 소득·재산 기준]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적용

입원연계 외래 진료기관 인정 범위

- 입원과 동일한 진료과목으로 입원 의료기관 및 타 의료기관 진료
- 타 진료과목이더라도 증빙자료(동일 질병명 증빙 서류) 제출 시 가능

구분	내 용	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에 따른 지급여부
예시	신청자 김00이 아래와 같이 진료실시	☞ 신청자 김00은 해당 입원에 대하여 ㉠~㉣ 병가일수 지급가능 ① 동일진료과목(내과)으로 진료 ② 입원과 동일한 의료기관(B대학병원) 및 타 의료기관(A의원)에서 진료 * 입원연계 외래진료에 대해 입원과 동일질환 치료 증빙 서류 첨부
	㉠ (입원 전 외래)	
	- 의료기관: 의원급 A의원	
	- 진료과목: 내과	
	- 내 용: 진료시 상급종합병원 진료의뢰	
㉡ (입원)		
- 의료기관: 상급종합병원급 B대학병원		
-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 내 용: 긴급 수술 및 입원치료		
㉢ (입원 후 외래1)		
- 의료기관: 상급의료기관급 B대학병원		
- 진료과목: (소화기)내과		
- 내 용: 입원치료 후 외래진료		
㉣ (입원 후 외래2)		
- 의료기관: 의원급 A의원		
- 진료과목: 내과		

□ **입원 및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기한: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구 분	내 용	신청기한에 따른 지급일수
예시	① (입원 전 외래) '21.4.13. (1일)	☞ 퇴원일이 '21.5.20.임에 따라
	② (입원) '21.5.14.~'21.5.20.(7일)	'21.11.15.까지 신청 시 ⇒ 9일 지급가능
	③ (입원 후 외래) '21.6.29. (1일)	'21.11.16.이후 신청 시 ⇒ ①~③ 지급불가

□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제출서류**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무급휴가 여부 기재-서식1), 동일 질병명 확인 서류 제출
(단, 영수증, 상세내역서, 처방전, 통원확인서, 소견서, 진단서 등 질병명(질병코드)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 서류 중 발급 비용 등을 고려하여 민원인이 선택)

- ① 1차 입원만 신청 시: 기존 입원 신청 서류와 동일
- ② 1차 입원 신청 +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기존 입원서류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질병명 확인 서류
- ③ 1차 입원 신청 후 2차로 입원연계 외래진료 신청 시: 신청서 + 입원연계 외래진료
동일질병명 확인 서류

□ **공단 일반건강검진 신청 시 추가 제출서류**

- 기존 제출 서류(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에 무급휴가 여부 기재 추가-서식1)

□ **확대지원(입원지원일수 확대, 입원연계 외래진료 추가) 적용 기준일**

- 확대지원 시행일('21.1.1.)부터 실시한 입원(퇴원일 기준) 및 입원 전·후 외래진료 건
 - ※ 입원의 경우, '21.1.1. 퇴원일 부터 최대 13일 지원 적용
 - ※ 입원연계 외래진료의 경우, '21.1.1. 외래진료일 부터 최대 3일 지원 적용
 - ▶ 입원 또는 입원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지원 가능일수 : 최대 13일
 - 입원10일+외래3일 / 입원11일+외래2일 / 입원12일+외래1일 / 입원 13일

구 분	내 용	신청기한에 따른 지급일수
예시1	㉠ (입원 전 외래) '21.1.15.(1일)	☞ 시행 일이 '21.1.1. 적용에 따라
	㉡ (입원) '21.1.25.~'21.1.29.(5일)	신청 기한 내 신청 시
	㉢ (입원 후 외래) '21.2.5.(1일)	⇒ ㉠~㉢ 7일 지급 가능
예시2	㉠ (입원 전 외래) '20.12.20.(1일)	☞ 시행일이 '21.1.1. 적용에 따라
	㉡ (입원) '20.12.30.~'21.1.12.(14일)	입원 전 외래 1일 ⇒ ㉠ 신청불가
	㉢ (입원 후 외래) '21.1.22.(1일)	입원, 입원 후 외래 ⇒ ㉡~㉢ 신청가능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확대 주요 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자 외래치료 확대 지원 -

1. 사업개요

- 확대내용:**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 확대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상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4주(28일) 이내 외래치료(검진) 받았을 때, 1인 1회에 한해 지원
- 시행기간:** 2021. 9. 30. ~ 2022. 12. 31.(※ 한시적 지원 / 소급지원 불가)
- 시행목적:**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열, 통증 등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근로취약계층이 외래치료 또는 검진을 신속히 받아 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한시적 긴급지원**
- 시행근거:**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2021.9.30.)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근로·사업소득자
 - 소득기준: 2022년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기준: 2억5천 이하
 - ※ 중복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출산, 요양, 성형, 미용으로 인한 입원제외)

【'22년도 소득기준 일람표】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8,654,180원)

- 지원금액:**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최대금액 1,291,800원
- 지원항목:**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실시

[※ 예방접종 다음날로부터 4주(28일)까지(접종일 미포함),
백신별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자]

- 지원일수: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시, 1인 1회 1일
-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인정 기준
 -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외래치료(검진) 동시 해당 사항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28일 이내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 실시

구분	내 용	신청 가능 여부
		☞ 사업 시행일 '21.9.30.
예시	① 코로나19 예방접종: '21.9.27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 '21.9.30	① 신청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외래치료(검진) 모두 사업시행일 이전 실시
	② 코로나19 예방접종: '21.9.30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 '21.10.5	② 신청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외래치료(검진) 모두 사업시행일 이후 실시
	③ 코로나19 예방접종: '21.10.25,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검진): '21.11.30	③ 신청불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검진)일로부터 4주(28일) 이상 초과

- 신청서류: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 및 진료확인서 등 증빙서류
- 신청기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사업 시행일 21.9.30.부터 적용)
- ※ 참고사항: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외래치료 또는 검진 실시에 대한 지원은
「2021년 9월 30일~2022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 지원.

□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9.22일 기준)1)

구분	전달체 백신(바이러스 벡터)		핵산 백신(mRNA)	
	아스트라제네카	안센	화이자	모더나
	2021.2.10, 5.21 허가	2021.4.7. 허가	2021.3.5. 허가	2021.5.21. 허가
매우 흔하게 (≥1/10)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 멍, 오심, 피로, 병감(권태), 오한, 두통, 열감(발열), 근육통, 관절통	주사부위통증, 오심, 피로,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통증, 주사부위증창, 설사, 피로, 오한, 발열 ^a , 관절통, 근육통, 두통	주사부위압통, 주사부위증창, 림프절병증 ^a , 오심/구토, 피로, 오한, 발열, 근육통, 두통, 관절통
흔하게 (≥1/100 이고 <1/10)	주사부위증창, 주사부위홍반, 구토, 설사 ^a , 사지통증 ^a , 열(발열) 인플루엔자 유사 질병 ^b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증창, 발열, 오한, 관절통 기침	주사부위발적 구토, 오심 통증	주사부위홍반, 주사부위두드러기, 주사부위발진, 발진
흔하지 않게 (≥1/1,000 이고 <1/100)	림프절병증 ^c , 복통 ^c , 식욕감소, 어지러움 ^c , 졸림 ^c , 다한증 ^c , 소양증 ^c , 발진 ^c , 두드러기 ^c	발진, 다한증, 무력증, 권태, 근육쇠약, 사지 통증, 등통증, 진전, 재채기, 구인두 통증	주사부위소양증, 주사부위온감, 주사부위부종, 주사부위홍반, 림프절비대 ^b , 상복부통증, 불면, 사지통증, 권태, 무력증, 코막힘, 발진, 인플루엔자 유사증상, 식욕감퇴, 등허리 통증, 근골격경직, 어지러움, 기면, 구인두통증, 다한증, 아간발한	주사부위소양증
드물게 (≥1/10,000 이고 <1/1,000)		과민증 ^a , 두드러기	급성말초 안면마비 ^c	급성말초 안면마비 ^b 안면종창 ^c
매우 드물게 (<1/10,000)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TTS) ^a 혈소판 감소증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TTS) ^a , 길랭-바레 증후 군		
빈도 불명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혈관부종,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모세혈관 누출 증후군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아나필락시스, 과민증
안전성 서한항목^d	길랭-바레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심근염/심낭염	심근염/심낭염
국외 안전성평가	길랭-바레증후군 ^e	길랭-바레증후군 ^e		

- 1)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서한(아스트라제네카 길랭-바레증후군 7.27, 안센 길랭-바레 증후군 7.27, mRNA 백신 심근염심낭염 6.25)
- 2) 유럽 EMA 약물감시위원회(PRAC)의 아스트라제네카백신과 길랭-바레증후군간 인과관계가 합리적인 가능성으로 간주됨에 따라 제품정보에 추가(9.8)
- 3) 미국 FDA의 안센백신 긴급사용승인정보 개정(7.13)(연관성은 미확인)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2판)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상세정보 약물이상반응 표의 백신별 각주 설명

[아스트라제네카]

- a. 주사부위 멍에는 주사부위 혈종(흔하지 않게)이 포함된다.
- b. 열감은 주관적으로 본인이 열이 있다고 느끼는 경우, 열은 객관적으로 38°C 이상을 나타낸 경우이다.
- c. 예측되지 않은(unsolicited) 이상사례
- d. 시판 후에 이 백신 투여 후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혈전 등 사례가 매우 드물게 관찰되었으며, 일부 출혈이 동반된 경우도 있었다.

[안센]

- a. 과민성은 피부 및 피하조직에서 발생하는 알레르기 반응을 의미한다.
- b. 이 백신 투여 후,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사례 중 혈소판감소증을 동반한 뇌정맥동, 간문맥, 하지정맥 및 폐동맥을 포함한 대혈관과 관련된 혈전증 사례가 매우 드물게 보고되었으며 일부는 출혈을 동반했다.

[화이자]

- a. 발열의 경우 2차 투여 후 발생 빈도가 더 높게 관찰되었다.
- b. 백신을 투여 받은 참가자 중 64명에서 림프절비대(림프절병증)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47건은 이 약과 관련성이 있었다. 전체 임상시험 중 중대한 이상사례가 1건 보고되었다.
- c. 안전성 추적관찰기간 동안 이 약을 투여 받은 참가자 중 4명에서 급성 말초 안면마비(또는 마비)가 보고되었다. 해당 사례는 1차 투여 후 37일차(참가자가 2차 투여를 받지 않았음)와 2차 투여 후 3, 9, 48일차에 발생했다. 위약군에서는 급성 말초 안면마비(또는 마비) 사례가 보고되지 않았다.

[모더나]

- a. 림프절병증은 투여 부위와 동일한 팔의 액와 림프절병증(액와 종창 및 압통)으로 평가되었다.
- b. 안전성 추적관찰기간 동안, 백신군 3명 및 위약군 1명에서 급성 말초 안면마비(또는 마비)가 보고되었다. 백신군에서는 2회 투여 22일, 28일, 32일차에 발생했다.
- c. 백신군에서 얼굴종창에 대한 중대한 이상사례 2건이 보고되었다. 2건 모두 피부에 필러 투여이력이 있었으며 백신 투여 후 1일 및 2일에 보고되었다.

「2023년도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주요 개정 사항

구분	2022년	2023년
주요 내용 (5쪽) 외	연 최대 15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1일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연 최대 14일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주요 내용 (5쪽) 외	1일 86,120원(’22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1일 89,250원(’23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주요 내용 (5쪽) 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은 ’22.12.31.까지 한시적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외래치료(검진)」 ’22.12.31.까지 한시적 시행, 신청기간이 치료(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23.6.28.일 까지 ※ 상세내용 지침 99쪽 참고
-	원본 제출	삭제
3.용어 정리 (16쪽)	2. 용어정리 나. 공단 일반건강검진	3. 용어정리 2) 공단 일반건강검진
3.용어 정리 (18쪽)	2. 용어정리 바. 사업소득자 ※ 법인사업자 해당 없음	3. 용어정리 6). 사업소득자 ※ 제외 대상 -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II.신청 및 지급 (25쪽)	○ 두 개 연도에 걸친 입원의 경우 지원 적용 기간 제한	○ 연도별 최대 13일까지 해당별 지급 ○ 연도별 최대 13일지급하나 장기입원 등 계속지 원 어려움으로 차년도 1월 1일 기준 - ’22.10.26. 이전 입원: 1개 연도(’22년도) 지급, ’23년도 미지급 - ’22.10.27. 이후 입원: 2개 연도(’22년도, ’23 년도) 지급 ※ 자문회의 결과 반영
II.신청 및 지급 (43쪽)		3. 신청등록 가. 신청등록 현장에서 접수한 신청서류는 온라인 접수 시스템(sickleave.seoul.go.kr)에 등록

Ⅲ.조사 및 선정 (46쪽)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table border="1" data-bbox="323 219 834 293"> <tr><th>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r> <tr><td>금액</td><td>1,944,812</td><td>3,260,085</td><td>4,194,701</td></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323 315 834 389"> <tr><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r> <tr><td>5,121,080</td><td>6,024,515</td><td>6,907,004</td><td>7,780,592</td></tr> </table> <p data-bbox="300 421 866 48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73,588원씩 증가(8인 가구:8,654,180원)</p>	구분	1인	2인	3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4인	5인	6인	7인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table border="1" data-bbox="914 219 1425 293"> <tr><th>구분</th><th>1인</th><th>2인</th><th>3인</th></tr> <tr><td>금액</td><td>2,077,892</td><td>3,456,155</td><td>4,434,816</td></tr> </table> <table border="1" data-bbox="914 315 1425 389"> <tr><th>4인</th><th>5인</th><th>6인</th><th>7인</th></tr> <tr><td>5,400,964</td><td>6,330,688</td><td>7,227,981</td><td>8,107,515</td></tr> </table> <p data-bbox="890 421 1457 488">※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 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8인 가구:8,987,049원)</p>	구분	1인	2인	3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4인	5인	6인	7인	5,400,964	6,330,688	7,227,981
구분	1인	2인	3인																														
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4인	5인	6인	7인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구분	1인	2인	3인																														
금액	2,077,892	3,456,155	4,434,816																														
4인	5인	6인	7인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Ⅲ.조사 및 선정 (46쪽)	- 일용근로자는 1년 평균 월 소득 반영	삭제																															
Ⅲ.조사 (46쪽)		※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조사 시, 신청인이 작성한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의 ‘소득내역’도 소득에 반영																															
Ⅲ. 조사 및 선정 (47쪽)		※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Ⅲ.조사 (48쪽)	소유주택 공시지가+임차보증금 80% 합산	③ 주택 소유자가 타 주택 임차 거주 시 적용 - 1주택: 소유주택 공시지가, 다주택: 소유주택 공시지가 합산																															
Ⅲ.조사 및 선정 (48쪽, 69쪽)		신청 시 ‘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시 가구원 동의없이 조사 가능함으로 신청서 양식에 내용 추가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 및 제19조(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 확인조사)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목적으로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처리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가구원 동의없이 조사 가능																															

<p>V.사후 관리 (61쪽)</p>	<p>가.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③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p>	<p>가. 환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사회보장급여의 환수)」 ③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 에 관한 법률」</p>
<p>V.사후 관리 (63쪽)</p>	<p>3. 환수관리 가. 환수금 채납 ● 채납처분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p>	<p>3. 환수관리 가. 환수금 채납 ● 채납처분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p>
<p>V.사후 관리 (63쪽)</p>	<p>나. 독촉 및 채납처분 ● 지원금 환수 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 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독촉하고, 납부기한(발급일로부터 10 일 이내)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p>	<p>나. 독촉 및 채납처분 ● 지원금 환수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 로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에는 ‘국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p>
<p>V.사후 관리 (64쪽)</p>	<p>다. 결손처분 ● 미 환수 건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에 따라 결손처분 처리할 수 있음</p>	<p>다. 정리보류(=결손처분) ● 미 환수 건은 자문위원회에 상정하여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에 따라 정리보류를 할 수 있음 ※ 「지방세징수법 제106조(결손처분)」에서 「지방세징수법 제106조(정리보류 등)」로 2022. 1. 28. 제목개정</p>
<p>VII.서식 (71쪽)</p>		<p>[서식 제1호]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신청서- 담당자 확인 사항-직업분류 일부 수정</p>
<p>VII.서식 (73쪽, 75쪽)</p>	<p>[서식 제2호]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제3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내역: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 (일용근로자는 1년 월 평균소득 기재)</p>	<p>[서식 제2호] 고용임금확인서 [서식 제3호] 근로(사업)활동 및 소득신고서 소득내역: ※ 신청시점 현재 신청인 월 소득</p>
<p>VIII.참고 자료 (92쪽)</p>		<p>담당자 확인 사항 분류 기준 [1. 직업분류]</p>